

---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토론회

국회 본관 223호

2021. 02. 23(화) 14:30

주최: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주관: 국회의원 강은미, 노동본부, 정책위원회



# 진행순서

## 1부\_ 개회 및 인사말

(사회: 김응호 노동본부장)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2부\_ 유가족 인사말

(사회: 김응호 노동본부장)

김미숙 님(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이용관 님(故 이한빛 PD 아버지)

김선애 님(한익스프레스 유족)

김도현 님(故 김태규 노동자 유족)

## 3부\_ 토론회

(좌장: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

발표 1 권영국 변호사

발표 2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상황실장

토론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손익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종합토론



---

# 목 차

---

인사말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2
	이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5
발표1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및 법률적 검토 [권영국 변호사]	9
발표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상황실장]	49
토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과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67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의미와 향후과제 토론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73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법률쟁점 [손익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79
	포스코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89

---



인사말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인사말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1대 국회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김미숙, 이용관님과 중대재해로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 검토를 해 주실 권영국 변호사님과 이 법 제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제해 주실 최명선 상황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향후 과제를 살피주실 류현철 소장님과 정흥준 교수님, 손익찬 변호사님과 방성준 부지부장님께도 고맙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내실있게 운영해 주실 정의당 김응호 노동본부장님과 실무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뒤돌아 보면, 짧게는 21대 국회 이 법이 제출되고 200여일만에, 길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 캠페인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수 많은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300여개가 넘는 노동, 시민사회 단체가 운동본부를 발족했고, 10만 국민청원 달성, 언론의 꾸준한 관심과 기획 보도로 이 법을 국민 72%가 지지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정되는 본회의장에서 참으로 서글픈 심정으로 기권 토론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실제 산업재해가 대부분 발생하는 원인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 법의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천 화재참사처럼 발주처의 공기단축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공무원의 책임을 제외한 부분도 문제입니다.



향후 이 법이 실제 산재 감축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명시한 것, 원청 처벌을 확대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하한형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과 시민재해에 대한 처벌 규정 부분 등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었지만, 확인 된 것만 최소 46분이 산재로 사망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 전날인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주요 대기업 9곳을 불러 산재청문회를 엽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산업재해와 노동자들의 사망에는 원청 대기업의 분명한 책임과 재발방지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하겠습니다.

특히 포스코와 같은 기업은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직업성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규모 집단 질환 발생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표적인 나쁜기업입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는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그 책임을 빗겨가고, 재계가 극렬하게 반대해 온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과 예방에 대한 역할을 강제하고 규율과 규칙을 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노동존중사회를 약속 할 만큼 우리 사회 산재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멍니다. 마음도 조급해 집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의당은 상시적인 산재 모니터링 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도적 보완 등을 촘촘히 살피는 역할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김미숙, 이용관 님과 산재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더 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이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 인사말



이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  
노동자 시민의 대중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2006년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 살인이다'라는 운동이 시작된 이래 15년 만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현장의 실태를 폭로하고, 법안을 만들고, 국회에 입법발의를 하고, 법이 통과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자,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진행한 대중운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수 십년동안 일터에서 죽어간 노동자, 대구지하철 참사부터 세월호, 가슴기, 스텔라이지호 까지 시민들의 죽음의 행진속에서 피해자 유족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15년의 긴 투쟁과정에서 수 많은 노동자, 시민, 정당, 전문가, 종교, 인권, 언론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왔습니다. 법안이 발의되고,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좌절을 반복하면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2020년 38명의 노동자 떼 죽음이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유족의 선도적인 투쟁, 10만명의 노동자 시민이 참여한 동의청원 운동, 국회 안과 밖에서 진행한 농성투쟁, 전국 곳곳으로 번져나간 동조단식, 각계각층의 선언운동과 국회의원 압박 등 그야말로 코로나-19 라는 악조건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한 대중운동이 결국 입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리고 2020년 해를 넘겨가며 법 제정운동에 힘과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공동토론회를 함께 주최하고 있는 정의당의 당원 및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이 수 개월 동안 국회 안에서 그리고 전국의 지역에서 운동본부와 함께 전개한 입법 운동과, 국회 원내에서 전개한 단식농성 등 공동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 공무원 처벌과 발주처 공기 단축 삭제, 50인 미만 적용유예 등 법의 실질 적용이 반쪽짜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시행도 전에 개정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하여 법률 자문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대형 로펌들, 대표이사의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방안 찾기에만 골몰하는 기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일터에서 중대재해는 계속 하루가 멀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슴기,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의 무죄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일터와 사회의 중대재해를 근절하는 것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생명과 안전이 차별받지 않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도록 하는 법 개정, 실질적인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공동 대응 운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종이호랑이가 되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 및 재판에 대한 대응 투쟁,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감독체계 개편 등 우리가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 사업으로만 전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 하나의 중대재해에 대응하는 현안의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갈 것입니다.

일터와 사회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생명 and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발표1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및 법률적 검토

권영국 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및 법률적 검토

변호사 권영국(해우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2. 중대재해처벌법의 헌법적 근거
3.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4. 주요 쟁점별 검토
5.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한계
6.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향

## 1. 들어가며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대 국회 시절인 2017년 4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이름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초 발의한 지 4년만이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을 선두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10만 국민동의청원 입법안,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나아가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까지 발의되거나 제출됐다.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에 대한 집중적인 언론보도,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산재 유가족의 단식농성, 70%이상의 찬성이라는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지지부진하던 국회 심의가 2020. 12월 24일 이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는 해를 넘긴 1월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 5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대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는 형식으로 법사위의 대안을 제안하고, 법사위가 제안한 대안법률안을 다음날 오전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사위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국회는 정부부처와 경제단체들의 반대 주장에 밀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을 거듭한 끝에 법률의 명칭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로 변경되었고, 산재사망자수와 비율이 가장 높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의 의무수행자인 공무원이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은 공포시점을 기준으로 3년 후로 유예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산재사망 절반 이하로 감축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기업과 최고경영자, 그리고 이를 감독해야 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자 했던 당초 법안의 제정취지가 크게 후퇴했다.

본 발제에서는 지난 1월 8일 통과하고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이 법이 갖는 의미와 한계,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 2.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회적·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헌법 제 32조제3항),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근로의 권리’에 ‘일할 권리’만이 아니라 ‘일하는 환경과 조건에 관한 권리’도 함께 포함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헌법 제34조제6항), “모든 국민은 보건의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헌법 제36조제3항)고 하여 재해 및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그리고 국민의 건강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매일 6~7명, 매년 2,000여명 이상이 일터에서 산재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를 달리는 비참한 현실은 우리의 경제규모와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눈만 뜨면 누군가 떨어져, 끼여서, 깔려서, 부딪혀서, 과로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하루에도 수차례 일과처럼 확인하고 있다. 세계 최고로 사람이 재해로 죽어가는 일상은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이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 위헌적인 현실이다. 자유경제시장에서 자본의 이윤 추구는 안전을 우선한다. 경제발전과 부의 증대가 안전을 결코 담보하지 않는다. 사람의 생명을 낙엽처럼 가볍게 여기는 위헌적 현실과 관습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보를 울려야 한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세워온 반윤리적인 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지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요구로 분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국민의 보건의 관하여 보호받을 권리,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노동의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기 위한 법제의 하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자신의 목적을 중대재해 예방과 일하는 사람과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1)</sup>

---

1)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공무원 의무 및 책임 관련 규정은 모두 삭제되어 목적과 내용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 3.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 가.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애초 발의된 법률안들에서는 법률 명칭에 중대재해의 책임주체와 처벌대상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기업’ 표기를 포함시켰으나<sup>2)</sup> 제정 법률에서는 기업을 삭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총 4장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를(제1, 2조), 제2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을(제3조~제8조), 제3장에서는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을(제9조~제11조), 제4장은 보칙으로 심리절차의 특례,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정부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제16조) 규정하고 있다.

#### 나. 법률의 구조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기관의 처벌
↓
징벌적 손해배상
↓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부칙 (시행일 등)

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 입법안)

## 다. 주요내용

- 1)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제4조 및 제5조).
- 3)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제6조 및 제7조).
- 4)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 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그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제9조).
- 5)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제10조 및 제11조).
- 6)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제15조).
- 7)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함(제16조).

## 4. 주요 쟁점별 검토

### 가. 법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p>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공무원 의무 및 책임 관련 본문 규정은 모두 삭제되어 목적과 내용의 불일치가 발생했다.</p>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의 기준을 확립하여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무제공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운영, 유해한 원료나 제조물의 취급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나. 정의 규정

### 1)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제2조제2호)	중대산업재해(제2조제2호)	중대시민재해(제2조제3호)
<p>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p> <p>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p> <p>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p> <p>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p>	<p>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p> <p>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p> <p>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p> <p>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p>	<p>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중대산업재해 제외)</p> <p>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p> <p>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p> <p>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p>

- 산안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를 모두 포괄해 규율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안법의 특별법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를 산안법상 중대재해에 비해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했다.

-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산안법에서는 “부상자 혹은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에서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라고 하여 법률에서 직접 범위를 정의한 반면, 중대산업재해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직업상 질병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2) 안전보건조치의 보호대상에 대한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p>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li> <li>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li> <li>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li> </ol>	종사자	<p>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p>
배달종사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의 중개를 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		



- 산안법상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이나 이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성을 갖춘 자로 한정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정한 조건 없이 타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하나의 타인 사업에 대한 전속성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사업 수행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는 모두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정의로 참고할만한 규정이다.

### 3) 안전보건 의무 주체에 대한 정의

#### 가) 사업주에 대한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1.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3.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플랫폼운영자)		

- 산안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규정한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는 근로자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사업 영위자와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 산안법상 사업주는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는 법인 또는 기관 등과 병렬적으로 규정되는 형식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별도 규정 없음	<p>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p> <p>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p>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란 대표이사 여부를 불문한다. 따라서 미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업의 ‘오너’나 ‘재벌총수’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는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 준하여야 하므로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적 권한과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해 총괄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임원으로 해석된다.
- ‘또는’의 문제 :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기업의 운영에 대한 총괄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안전보건업무의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법의 책임주체인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또는’ 방식으로) 정의함으로써 법의 책임 주체가 선택적인지 병존적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 발의안들에서는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 및 이사’ 로 정해 최고경영자의 병존적 책임 구조를 제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선택적 책임 구조로 변경됐다.

#### 다. 법의 적용범위 및 경과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한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과규정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 유예 규정은 두지 않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안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 및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에서 전면 제외하고 있다.

-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법 공포 후 3년간 시행을 유예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사업주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수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정해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경과규정을 적용하게 되므로 독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p>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li> <li>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li> <li>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li> </ol> <p>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li> <li>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li> <li>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li> <li>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li> </ol> <p>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li> <li>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li> <li>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li> <li>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li> </ol> <p>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li> <li>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li> <li>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	--

- 산안법상 안전보건 의무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의무’로 구성되며, 이들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법인격으로서의 개인 혹은 법인)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로서 이들 의무의 주체를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사업주 내지 법인의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산안법상 의무의 행위자는 사업주(법인격으로서의 개인 혹은 법인)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행위자는 개인사업주 혹은 법인의 경영책임자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으로서 2호(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3호(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는 취지와 의무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1호(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불명확하다.

- 1호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는 재해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과 안전시스템 구축 의무로 해석된다. 즉, 재해예방을 위한 조직 설치·인력 배치·예산 배정·운영체계 구축 및 그 이행을 위한 점검·감독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는 1~3호의 의무가 ‘이행에 관한 조치’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관리상의 조치’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직접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그 의무이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그 의무의 내용이 불투명하다. 결국 4호의 조치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부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마. 도급인 등의 안전보건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의 내용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p>의무의 인적 범위</p>	<p>제2조(정의)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p>	<p>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b>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b></p>
----------------------	--	---

- 산안법상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 제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미치는 인적범위는 자신의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제77조), 배달종사자(제78조)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원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미치는 인적범위는 자신의 근로자, 관계수급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이다.
- 산안법상 도급인의 의무가 미치는 물리적 범위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인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미치는 물리적 범위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장소’에 ‘시설’과 ‘장비’를 추가하고 있다.
- 또한 산안법에서는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정한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산안법상의 ‘지배·관리’와 유사한 듯하나 ‘운영’을 추가하고 현실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닌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으면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물리적 적용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망	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부상 혹은 질병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범 가중처 벌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산업법에서는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치사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산업법에서는 사망이 아닌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산업재해 결과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이외에)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도입했다.



- 산안법상의 의무 주체 및 처벌의 객체는 조문상 모두 사업주(법인이나 개인사업주)로 표시되어 있으나 양벌규정에 의해 의무위반자인 행위자가 처벌을 받게 되고 그 행위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주(법인이나 개인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구조이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주체 및 처벌의 객체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주체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동일하므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사. 중대재해의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p>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li> <li>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li> </ol>	<p>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li> <li>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li> </ol>

- 산안법상의 양벌규정은 일반적인 양벌규정과 다른 규정 방식이 다르다.<sup>3)</sup> 일반적으로 양벌규정은 행위자가 법위반행위로 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고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데, 산안법에서 의무이행주체는 사업주인 법인이므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 정범이 되고, 행위자인 종업원은 의무이행주체가 아님에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처벌되는 구조이다.

3)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좀 더 상술하면 산안법상의 의무조항은 “사업주는 ~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의무이행주체가 ‘사업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처벌의 객체는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주이다. 이렇게 처벌의 객체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주이지만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법 위반 책임을 묻게 된다. 즉, 산안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법에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조항의 위반 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처벌하려는데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도74판결).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자연인)에게 직접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므로 의무 주체 및 처벌의 객체는 동일하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법인이나 기관이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법인이나 기관 또한 양벌규정에 의해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사망 외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아. 징벌적 손해배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안법에서는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안전조치비용 대비 사고처리비용을 높여 안전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법 심의과정에서 당초 발의안들에 포함되어 있던 하한을 삭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켰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아닌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게 5배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책임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이익의 수취자인 법인에 대해 사고 처리를 위한 비용 지출을 높이도록 해 기업의 비용 차원에서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 5.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한계

법을 제정하면서 그 법의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그리고 목적을 실행할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연 성공작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활동 과정에서 수반되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건강의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주체를 권한을 가지고 이익을 수취하는 기업과 기업의 경영책임자로 설정하고, 그 권한과 이익을 법적 책임과 일치시키자는 법이다.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익을 얻는 자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현실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부담해야 할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등의 사고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높여 그 법의 위하력을 통해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안전에 투자할 유인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이를 위해서는 ‘나도 감옥에 갈 수 있다’ 는 최고경영자들의 위기의식, 매출액에 비례하는 벌금, 수사기관과 법원이 중대재해를 교통사고와 같은 단순법규위반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기업범죄’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규범인식의 전환, 이를 통해 법이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에 우선 가치를 두고 투자하도록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아직 판단하기는 선부르나 긍정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 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갖는 의의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현장관리자를 처벌하는 산안법과 다르게 처음부터 기업 운영의 총괄적인 권한을 갖는 법인의 경영책임자 또는 개인사업주에게 직접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경영책임자 또는 개인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형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정의에서 직업성 질병자를 포함시켜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보건상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시켜 건강장해를 야기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인 '기업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산안법 체계 하에서 질병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인정 여부를 다투는 정도에 그칠 뿐 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행정부의 판단에 맡긴 것은 법률주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하겠다.

**셋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자유형에서 하한형을 도입한 것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을 초래한 행위를 단순과실범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일부 법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치사죄의 기본적인 양형 기준을 1년 ~ 2년 6월로 정한 것과 비교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자유형의 하한(징역 1년)은 중대재해에 대한 억지력으로 기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넷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사망 이외의 중대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재해 결과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치사죄를 두고 있지 않는 산안법상의 처벌 공백 상태를 보완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다섯째,** 이 법의 가장 큰 성과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원청 사업주가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장비·장소에서는 원청 사업주 또는 경영책

임자에게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 관계에 있는 모든 수급인과 그 수급인의 종사자(특수고용형태노동자 포함)에 대해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고, 하도급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하도급업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해당 안전보건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원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규정했다는 점이다. 원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종사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중범이나 공범이 아니라 자신의 독립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섯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손해배상을 하청 사업주는 물론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하한이 삭제되고,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으로 한정하고,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된다는 단서를 달아 책임 범위를 축소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나. 중대재해 처벌법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

**첫째,** 법의 적용범위를 정의규정에서부터 현저히 축소하고 있다.

1) 직업성 질병자의 경우 사고재해에 비해 인정요건을 축소하고, 질병자의 범위마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질병사망자수가 사고사망자수를 추월한 것은 이미 2017년부터이고 그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자료)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9.
사망자수	1,810	1,777	1,957	2,142	2,020	1,571
사고	955	969	964	971	855	660
질병	855	808	993	1,171	1,165	911
사망만인율	1.01	0.96	1.05	1.12	1.08	
사고	0.53	0.53	0.52	0.51	0.46	
질병	0.48	0.44	0.54	0.61	0.62	

그럼에도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서 '사고재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고 하여 법률에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한 데 반해 ‘질병재해’에 대해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여 직업성 질병자의 종류와 범위를 시행령으로 일괄 위임하고 재해자수도 3명으로 정해 사고재해(2명)에 비해 범위를 좁히고 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에서도 사고재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인데 비해 질병재해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으로 정의하여 차이를 두고 있다. 사고든 질병이든 발생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재해라는 측면에서 동일함에도 중대재해의 정의에서 치료일수를 달리 정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2) 법이 적용될 장소와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영업장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그런데 이 조건에 포함하는 업소는 전체 다중이용업소 179,256개 중 2.5%인 4,492개소에 불과하고 97.5%는 제외된다. 즉 97.5%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학원, 영화상영관, 고시원 등도 포함)는 화재 및 소방안전에서조차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

3) 공중교통수단 중 여객자동차의 경우 노선 시외버스만 포함시키고 그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규모가 큰 시내버스, 일반택시까지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육상교통수단에서도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둘째, 이 법의 최대 흠결은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을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여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명 생명차별법으로 불리고 있다.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체는 79.8%에 이르고, 이들 사업체에서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사고재해 중 33.3%, 중대재해 중 30%, 사고사망자 중 35.0%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사고재해의 3분의 1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전 사각지대를 합법화한 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차별에 이어 생명과 안전에서조차 차별적 구조를 만들었다. 국회와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의 목숨은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셋째, 사고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발주사’와 ‘발주공사’를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사망 사고에 대해 큰 구멍을 열어두었다.

중대재해 및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발주로 시작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된다.

<2020.1.1.~12.31.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신고접수 현황>

	전체 현황	건설업 현황	전체대비 건설업 비중
중대재해 건수	692건	386건	56%
중대재해 사망자	740명	426명	58%
중대재해 부상자	71명	39명	55%

공공기관에서의 사고사망자 중 85.2%가 발주공사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현황(‘14~’18.9월)>

(단위 :명)

		계	국토교통	에너지	환경	농업	항만	기타
<b>발주공사(건설 등)</b>		<b>241</b>	<b>114</b>	<b>75</b>	<b>22</b>	<b>12</b>	<b>6*</b>	<b>12</b>
자체 작업장	직영	34	19	12	1	1	-	1
	하청	8	3	4	-	1	-	-
<b>계</b>		<b>283</b>	<b>136</b>	<b>91</b>	23	14	6	13

□ 사고사망자는 유형별로는 발주공사,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 분야별로는 국토교통·에너지, 원인별로는 추락에서 다수 발생

\* (유형4) 발주공사 85.2%(241명), 직영 12.0%(34명), 하청 2.8%(8명)

\* (규모) 100인미만 57.6%(163명), 100~300인 25.4%(72명), 300인이상 17.0%(48명)

\* (분야) 국토·교통 48.1%(136명), 에너지 32.2%(91명), 환경 8.1%(23명) 등

\* (원인) 추락 35.3%(100명), 충돌 19.8%(56명), 감전 7.1%(20명) 등

4) 발주공사: 도로·교량·아파트 등 구조물을 새로 만들어 설치하는 토목 및 건축공사 자체 작업장: 공공기관이 직영 또는 하청으로 제품을 생산(전기, 난방 등)하거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작업장

건설공사나 조선업에서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발주사의 '공사기간 단축'이나 '탈법적인 공법변경'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는 발주사인 한익스프레스의 공기단축 요구에 따른 혼재작업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발주자를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넷째, 이 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선택적으로 정의했다. 경영책임자 정의에서 접속사를 “그리고”가 아닌 “또는”을 사용함으로써 책임의 주체를 병존적이 아닌 선택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백해런 법사위 법안제1소위 위원장이 법안 심의과정에서“차관에게 전속 권한을 주고 일을 맡겼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장관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밝힘으로써 애초 “ 및(and)”이었던 접속사가 “또는”으로 바뀐 이유를 짐작하게 해주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업무담당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전속 권한을 주고 그 업무를 맡기는 형식을 갖추게 되면 안전보건업무담당자에게 책임의 공이 넘어가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조직 체계에서 안전보건임원 내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고 최고경영자가 이들에게 안전보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임원 내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열어둔 셈이다.

다섯째, 이 법의 제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업무'를 포괄적이 아닌 4가지의 제한적 의무로 열거하고, 그 의무 또한 직접의무가 아닌 '간접의무'방식으로 규정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1)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를 제한적 열거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규정이다. 형법 제268조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는 ‘업무’에 대한 어떠한 정의나 범위도 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이라는 표현 속에 업무와 관련된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두고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의 포괄적 안전보건 의무(유해위험방지 의무) 규정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을 거론하며 위헌이라고 공격했던 반대론자들은 이에 비해 훨씬 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와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연 위험을 방지할 모든 의무를 법규정으로 열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일까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위 규정 방식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에서 취하고 있는 포괄적인 규정방식과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체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구성되는 방식이 사람의 사망을 유발하며 사망자에 대해 해당 조직체가 지는 관련 관리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체는 유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위반”이란 ‘조직체에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이고, “관련 관리 의무”란 ‘과실법에 따라 조직체가 지는 의무’라고 하여 직접의무 방식을 취하고 있다.

(1) 조직체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구성되는 방식이 다음과 같을 경우, 본 조가 적용되는 조직체는 유죄이다.

- (a) 사람의 사망을 유발하며
- (b) 사망자에 대해 해당 조직체가 지는 **관련 관리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2) 본 조가 적용되는 조직체는 다음과 같다.

- (a) 기업
- (b)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

- (c) 경찰
- (d) 고용주인 동업회사, 또는 노동조합 또는 고용주 협회
- (3) **고위 경영진에 의해 조직체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구성되는 방식이 제(1)항에 언급된 위반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우에만, 조직체는 본 조에 의거하여 유죄이다.**
- (4) 본 법의 목적상,
  - (a) “관련 관리 의무”는 제2조에서 주어지고 제3조~제7조에서 해석된 의미를 가진다.
  - (b) 조직체의 관리 의무 위반은 해당 의무의 위반에 달한다고 주장되는 행위가 그 상황에서 **조직체에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 “중대한” 위반이다.**
  - (c) 조직체와 관련하여 “고위 경영진”이란 아래 사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i) 조직체 활동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관리되거나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의사 결정
    - (ii) 그러한 활동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의 실제적 관리 또는 구성
- (5) 본 조의 적용을 받는 위법 행위는 다음과 같이 불린다.
  - (a) 기업 과실치사 - 잉글랜드 및 웨일스 또는 북아일랜드 법의 적용을 받는 위법 행위의 경우
  - (b) 기업 살인 - 스코틀랜드 법의 적용을 받는 위법 행위의 경우
- (6) 기업 살인의 죄가 있는 조직체는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 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 (7) 기업 살인 위법 행위는 최고 법원에서만 기소될 수 있다.

## 제2조 “관련 관리 의무”의 의미

- (1) 조직체와 관련하여 **“관련 관리 의무”는 과실법에 따라 조직체가 지게 되는 다음 의무를 의미한다.**
  - (a) 조직체의 피고용인 또는 조직체를 위해 일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다른 개인에 대해 지는 의무
  - (b) 시설의 점유자로서 지는 의무
  - (c) 다음과 관련하여 지는 의무
    - (i) 조직체에 의한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보상 여부 불문)
    - (ii) 조직체에 의한 건설 또는 보수 작업 수행

(iii) 조직체에 의한 기타 상업적 활동 수행

(iv) 조직체에 의한 공장, 차량 또는 기타 물건 사용 또는 유지

(3) 제(1)항은 제3조~제7조의 적용을 받는다.

(4) 제(1)항에서 과실법에 따라 지게 되는 의무에 대한 언급은 **과실법에 따라 지게 될 의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나 해당 법에 따른 책임을 대신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법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과실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잉글랜드 및 웨일스와 관련하여 1957년 점유자 책임법(c. 31), 1972년 결함시설법(c. 35) 및 1984년 점유자 책임법(c. 3)

(b) 스코틀랜드와 관련하여 1960년 점유자 책임(스코틀랜드)법(c. 30)

(c) 북아일랜드와 관련하여, 1957년 점유자 책임법(c. 25), 1975년 결함시설(북아일랜드)명령(S.I. 1975/1039(N.I. 9)), 1987년 점유자 책임(북아일랜드)명령(S.I. 1987/1280(N.I. 15)) 및 2001년 결함시설(시설주 책임)(북아일랜드)법(c. 10)

2)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관리상의 조치와 같이 간접의무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의무란 명시적인 2호와 3호 의무를 제외하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1호)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4호) 의무인데 이들 의무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혹은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써 간접의무이다.

법규정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기업의 대표이사가 사업장 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나 안전보건담당 임원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시하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관리상의 조치

로 자신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직접의무를 부담하는 현장책임자가 처벌받고 관리상의 의무만을 지고 있는 기업 경영책임자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재의 산안법 체제와 별반 달라질 것이 없을 수 있다.

**여섯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애초 법안이나 정부안보다 훨씬 낮추어 처벌의 실효성을 반감시켰다.**

1) 자연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징역'으로 정해 애초 발의안(3년 이상 징역, 5년 이상 징역)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안(2년 이상 징역)보다 대폭 낮췄다. 그리고 사망 인원수에 따른 형의 가중조항을 삭제하여 한 사람이 죽든 100명이 죽든 한 사건이면 한 건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의 수위를 대폭 축소했다.

2) 법인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방지대책으로 마련한 벌금형의 하한형을 삭제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죄질을 감안해 법인에 대해 매출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가중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한을 정액(50억원)으로 변경했다. 매출액이 수백조 내지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로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수준이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비례하는 벌금형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3)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인의 법적 책임은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가 존재할 때만 물을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관리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곱째,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손해액의 3배 이상 혹은 5배 이상)을 삭제하고,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고,<sup>5)</sup> '사업주로의 입증책임 전환 조항'<sup>6)</sup>을 '사업주 면책규정'<sup>7)</sup>으로 변경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켰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고하고, 기업의 사고처리비용을 안전투자비용보다 높여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려던 제도의 취지를 크게 약화시켰다.**

5)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이외에 법인이나 기관의 대리인, 사용자, 종업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6)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덟째,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감독할 공무원의 책임과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해주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재해예방 및 위험방지의무를 규정한 헌법 이념과 안전을 감독할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참사, 경주마우너오션리조트 붕괴사고, 춘천산사태 펜션매몰사고 등은 공무원의 불법적인 인허가 혹은 감독 부재에 기인한 사건이나 처벌받지 않았다.

**아홉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3년간 시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규모별 산업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여개 사업장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이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사고재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93.3%가 50인 미만 사업체다.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안은 **전체 사업체의 98.8%, 건설업체의 93.3%에 대해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장 중 1%에 불과한 사업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축소시켜 85% 이상의 중대재해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재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무색해져 버린다. **형법의 보편적 적용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의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칙조항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사망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사업체들에게 이 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년이나 지나서 나중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단계적 시행 방안은 사고 비중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사고사망자수의 60~79%, 사업체의 98.8%, 건설업체의 93.3%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에 대해 3년이나 법의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용인’해주는 법의 공백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다. 과연 정당한가?

## 6.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향

### 가.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법 적용 제외에 대한 의견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헌법상 이념에 정면으로 반한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의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1.00,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0.44,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이 0.36,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0.31,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이 0.22, '1000인 이상 사업장'이 0.07이었다. 즉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 수록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수가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무려 약 14.3배나 많은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의 적용 제외 규정은 폐기해야 한다.

### 나. 중대(산업)재해의 범위에 대한 의견

1) 중대산업재해에서 직업성 질병자의 경우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업성 질병자에 한해 중대재해에 속하는 질병자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를 반대해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어려운 희귀질병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 그리고 유해물질에 오랜 노출되거나 상당한 잠복기간을 거쳐 나타나게 되는 질병의 경우는 중대재해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직업성 질병자가 중대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하위법령의 정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므로 처벌의 범위가 하위법령으로 정해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고 이는 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 시행령 위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2) 직업성 질병자의 경우 중대재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질병의 종류 이외에도 동일한 원인으로 3명 이상이 발병해야 한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인정하는 부상자 기준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기준으로 부상자와 달리 질병자의 경우 3명 이상 발생으로 정한 것은 자의적이므로 2명으로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복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직업성 중독 질환자 2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경영책임자의 정의에 대한 의견

1)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는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안전보건 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로 정정해야 한다.

2)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의 객체를 ‘~ 및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매우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생산을 우선하는 ‘생산이사’나 납기일을 중요시하는 ‘관리이사’ 등이 납품 일정을 고려하여 안전조치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거나 부정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한 경우 안전점검이나 안전조치 생략을 종용한 생산이사나 관리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안전조치 우선을 주장한 안전이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 및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경영책임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및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

나. (동일)

## 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의견

1)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를 ‘관리상의 조치’와 같은 간접의무가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와 같이 직접의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전면개정 산안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발주자의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의무를 본법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예산의 편성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안전·보건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
4.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5. **공기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

## 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수위에 대한 의견

1)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통해 중한 결과로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다. 이러한 진정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죄(안전보건 의무 위반)를 고의로 행하였다는 행위반가치의 중대성으로 인해 과실범의 법정형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기본범죄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법정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	유기치사죄	위험운전치사죄	어린이치사죄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법률	형법 제262조	형법 제259조	형법 제27조제1항	특가법 제5조의11	특가법 제5조의13

형법상 기본적인 진정결과적가중범으로는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유기치사죄 등을 들 수 있는데 부작위범으로 중대재해법안의 부작위범과 유사한 유기치사죄에 있어서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치사죄 역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의13). 민식이법에서의 법정형은 하한에 있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고 상한형은 무기징역형으로 훨씬 중하다.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 진정결과적가중범들에서는 벌금형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법정형도 이들 진정결과적가중범의 처벌 수위를 참고하여 하한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라 오히려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해야 다른 기본적인 진정결과적가중범죄의 법정형과 형평을 맞추는 것이라 하겠다.

2) 벌금형의 경우 2013~2017년 산업재해 상해 및 사망사건의 형량분석 결과, 자연인에게 부과된 벌금액 평균은 421만원, 법인에게 부과된 벌금액 평균은 448만원으로 처벌이 기업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그로 인해 재범률이 9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벌금형의 하한형을 정하고 있는 강은미의원안(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바. 법인의 양벌규정에 대한 의견

2019년 재계 매출액은 삼성전자 230조원, 현대자동차 105조원, 포스코 64조원, 엘지전자 62조원, 한국전력공사 59조원, 기아자동차 58조원, (주)한화 50조원, 현대중공업 47조원, 현대모비스 38조원, 지에스칼텍스 33조원, 신세계 29조원 등이다. 삼성전자는 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은 매년 살인기업으로 지목될 만큼 산재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사업장이다.

매출액이 수천억원 내지 수백조에 이르는 대기업에게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어떤 위하력(예방효과)을 가질 수 있을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기단축으로 얻는 이익이 수백억원에 이른다면 기업이 선택할 길은 명확하다. 벌금형은 기업 이윤을 위한 통과외레가 될 뿐이다. 캐나다의 단체형사책임법과 영국의 기업살인법에서는 상한선 없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벌금액은 반드시 경영진 등이 산업안전 관련 법률 준수 필요성을 가지도록 기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징벌적이고 충분해야 한다(영국의 2016년 변경된 기업과실치사 및 살인 양형지침).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인에게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반의 고의성, 재범 여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공무원 처벌 규정에 대한 의견

영국에서 기업살인법이 도입된 계기는 1987년 런던 도심에 있는 킹스크로스 지하철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30명이 사망한 사고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대구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해 192명이 사망했고, 151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세계 최악의 지하철사고 중 2위로 기록된 이 대형참사는 영국처럼 기업살인법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못한 채 방화범과 기관사 등 현장노동자들 몇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대구지하철공사 사장과 대구시장이 기소되었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우발적 방화가 대형화재로 순식간에 번질 수 있었던 것은 전동차에 사용해야 할 재질을 불연재보다는 난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전동차 제작비용을 낮추어 납품할 수 있었던 관련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질 않아 난연재조차 사용하지 않은 불법 전동차는 정부 검사에서 합격을 받았다. 이른바 잘못된 공무원의 인허가 검사와 합격 처리는 '불쏘시개 전동차'를 만들었고 방화를 대형화재로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194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체육관 신축 관련 서류가 위·변조되고 이를 방조한 공무원의 문제가 밝혀졌으나 하청기업만 처벌받았을 뿐 공무원 불문 경고에 붙여진 것이 전부였다.

1999년 경기도 화성군의 청소년 수련원인 씨랜드에서 화재가 발생해 취침 중이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 춘천 산사태로 팬션을 덮쳐 그곳에 묵고 있던 인하대 봉사단 대학생 12명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위 두 사건 모두 공무원의 불법적인 인허가가 원인이었으나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사의 시간은 우연적이지만 구조적이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대신 빠른 수습을 택했고, 참사를 야기한 책임을 거슬러 올라가는 대신 가장 말단의 책임자를 처벌해왔다. 그러는 사이 참사는 노동현장에서, 지하철에서, 다리에서, 백화점 건물에서, 그리고 세월호에서 얼굴을 바꿔가며 발생했다.

전세계의 대형사고를 조사연구한 영국사회학자 찰스 페로가 지적했듯이, 참사의 위험을 지닌 위험한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참사를 막을 수 없다. 참사에 가해지는 체계적이고 복잡한 권력의 연결망에서 위험이 증식하고 있는 지점을 찾아서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것은 기업 내부뿐 아니라 기업의 바깥까지 연결되어 있다. 원청기업과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적 참사로 인해 드러난 안전의 문제가 곧 권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직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인한 사회재난이나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준수 감독 및 인허가 공무원과 그를 감독하는 책임공무원에게 실효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 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의견

- 1)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 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능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사람 생명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경제적으로 사고처리 비용을 높여 안전조치와 투자를 자발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
- 2) 사업주의 증거 독점과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재해의 발생과 손해의 존재를 증명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였음과 안전보건의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배분하여 손해배상제도의 공평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중대재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때에는 **그 손해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③ 제1항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한다.**

## 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

1) 정부의 단계적 시행 방안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거대한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9년 총 노동자수는 1,872만 5,160명이었다. 이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299만 6744명,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816만 6782명,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1,116만 3,526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약 60%였다.

따라서 정부의 단계적 시행 방안에 따르면, 이 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노동자는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노동자의 약 40% 이하에 불과하게 된다.

중대재해법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는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 수 있도록 비용과 기술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의 적용 유예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2) 전체 사업체의 98.8%, 건설업체의 93.3%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간이나 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현저히 격하시킬 뿐만 아니라 형법의 보편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지원을 통해 최대한 압축적으로 안전 시설을 갖추 수 있게 하고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발표 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상황실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상황실장 최명선

## 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운동 역사 경과

2021년 1월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공포되었다. ‘기업 살인법 제정운동’이 본격화된 2006년부터는 15년, 구체적인 법안이 만들어진 2012년부터는 10년 동안 전개된 운동의 결과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수 십년 동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이다. 87- 88 노동자 대투쟁 당시 중공업 조선소 노동자들의 중대재해 대응 투쟁 등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항상 ‘산업재해 추방’의 깃발이 휘 날렸다. 1988년 15살 문 송면 노동자의 수은중독, 원진레이온의 직업병 투쟁은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노동자, 시민의 연대투쟁으로 한국사회에 제기한 첫 번째 투쟁이었다. 현장별 중대재해 대응, 직업병 인정 투쟁에 이어 외환위기 전후에는 구조조정 투쟁에 맞선 근 골격계 집단 산재신청 투쟁이 업종별로 확대되어 전개되었고, 산재보험 제도 개혁 투쟁으로 이어졌다.

2003년 노동건강연대가 영국의 기업 살인법 제정운동을 소개하고, 2006년 매일노동뉴스의 제안으로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시작한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기업 살인법 제정운동’의 본격적인 시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의 기본 취지는 ‘산재사망은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인 살인이다’ 라는 사회운동이었다. 이후 영국에서 2008년 법이 제정되고, 처벌사례가 본격 소개되기 시작했고, 한국은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판결이 벌금 2,000만원에 그친 것이 제기되면서, 산재사망을 줄이는 주요 대책으로 ‘기업 살인법’제정이 노동시민사회의 주요 요구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2012년이 되어 서야 선언적 요구에서 구체적인 입법운동으로 전화되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 하청 노동자 5명 사망사고로 의제화 되기 시작한 하청 산재문제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2012년부터 ‘하청산재 원청책임강화’ ‘산재사망 처벌강화’로 2대 의제를 정식화 했다. 민주노총, 민변, 노동건강연대를 주축으로 법률팀을 구성하여 영국의 기업 살인법 취지를 살려 한국의 ‘환경범죄단속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모티브로 한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법안을 정식

화 했다. 이후 '하청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산재사망에 대한 경영책임자, 원청을 처벌하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의 2개 법안에 대한 입법 운동이 본격화 되었고,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입법발의 되었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노동시민사회는 산재사망뿐 아니라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확대 정식화 되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가슴기 살균제 참사 등 연달아 발생한 대형 시민참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기업 살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확장시켜 나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위상이 높아진 생명안전의제로 2015년 20개 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를 발족하고, 청원입법, 의원입법 등 국회 입법발의를 해 나갔고, 중대재해에 대한 고발투쟁, 공동대응 투쟁 등 대중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2015년 구의역 참사 이후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안법 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은 수 년 동안 한국의 노동자, 시민재해의 2대 핵심의제로 대중적 입법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년도	주요 내용	주요 참여단위
2006	2003년 노동건강연대 2003년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 캠페인 전개	노동건강연대 등
	2006년 영국의 기업 살인법 국내 소개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시작 (매년 진행)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2012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원청책임강화 산안법 개정안 입법안 마련, 토론회 및 입법발의 운동	민주노총, 민변, 노동건강연대,
2013년	정의당 심상정, 통합진보당 김선동 입법발의	
2014년	416연대 존엄안전위원회 기업 살인법 논의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 416연대 등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 심포지엄 / 정당 간담회 기업 살인법 제정 영국, 호주, 캐나다 초청	민주노총, 세월호 참사 대책위, 416 가족 대책위
2015년 4월	기업 살인법 국회 토론회 법안 토론	416연대, 노동건강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2015년 7.2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발족 (20개 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발표 및 청원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 연대

	832명 청원. 소개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 국회의원 18명 공동 참여 강남 스크린도어 참사, 충북 지게차 사고 등 고발 투쟁 세월호 특조위 연구 참여. 책자. 리플렛	
2017년 4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회찬 의원 입법발의 - 심상정, 김종훈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 입법발의 - 박주민, 전해철 유사법안 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노회찬의원, 민주노총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발족 10만 동의 청원 국회 입법발의	중앙 및 8개 지역운동본부 310개 단체 참여
2021년	법안 국회 통과 및 공포	

## 2. 2020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의 전개

### 1) 폭발 직전에 있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성된 '416연대 존엄과 안전위원회'내에 별도 입법 준비팀이 만들어졌고, 산재사망과 시민재해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처벌 판결을 분석하면서 법안을 만들어 나갔다. 법안은 피해자 단위, 건강권 단위 등 수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하면서 법안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 나갔다. 대구 지하철 피해자 대책위의 제기로 공무원 처벌이 도입되고,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위의 제기로 제조물 관련 내용이 보완되었다. 반도체 직업병 피해, 메르스 참사, 장성요양병원 참사, 씨 랜드 및 해병대 캠프 사고, 판교 환풍기 붕괴 사고 등 하나하나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 마다 법안은 추가되고 보완되어 나갔다. 완성된 법안을 갖고 각 산재사망과 시민참사의 판결에 적용해 보면서 법안을 다듬는 과정은 노동자, 시민 하나하나의 죽음과 피해자 유족의 피눈물로 만들어졌다. 2015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을 정식화 한 이후에도 2020년 국회 동의청원 법안이 만들어 질 때 까지 구체적인 사례와 판결을 기초로 한 법안 보완은 계속되었고, 이 과정은 워크숍, 토론회등 노동자 시민의 참여로 진행되어 왔다.

2012년- 2013년 당진현대제철, 대림, 현대 중공업 등의 연속적인 참사와 하청 비정규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집중조명,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생명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있었다. 무엇보다 2016년 발생한 19살 구의역 김군의 참사와 이에 대한 대응 투쟁은 시민들의 애도의 물결로 이어졌다. 촛불 혁명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시민사회 진영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생명안전의 첫 번째 과제로 제기했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시켰다. 2018년 문송면, 원진레이온 30주기 사업위원회에 2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를 조직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는 30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투쟁의 발판이 되었다. 2018년 2월부터 사업과 투쟁이 전개된 가운데,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 참사가 발생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으나, 산안법 개정안에 있었던 1년 이상의 하한형 형사처벌은 삭제된 채 통과되었다. 2016년 구의역 김군 때부터 2018년 김용균 투쟁 까지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시민재해의 심각성,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헐값 취급하는 자본에 대한 분노는 쌓이고 쌓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저변은 넓고, 깊게 쌓여 나갔다. 특히, 전국적인 투쟁으로 30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지만, 하한형 형사 처벌은 도입되지 않았고,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끊이지 않아,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끊어 내야 한다는 대중적 분노는 폭발 직전에 있었다.

##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본격화와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2017년 입법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심의 없이 폐기되었고, 2018년부터 반올림, 메탄을 피해자, 삼성중공업 피해자 등 주제로 나서기 시작한 피해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투쟁을 전후로 ‘다시는’을 결성하여 결합력이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2020년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투쟁’을 결의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1대 국회에 입법집중 투쟁을 위해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결성을 준비했다. 법안준비, 입법발의 운동, 조직정비를 하던 4월29일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떴죽음을 당했다. 2008년의 이천 냉동 창고 참사와 판박이 사고가 발생하면서, 2008년 당시 벌금 2,000만원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했고, 운동본부 결성과 사업에 가속이 붙었다. 2020년 5월17일 130여개의 단체로 발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지역운동본부 결성이 속속 이어져 12월에는 중앙과 8개의 지역운동본부 31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제정운동을 집중 전개했다. 제정운동의 가장 주요한 사업으로는 25일 만에 10만명이 참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동의청원운동이 전개되었고, 국회 법안 심의 통과 과정에서는 국회 안과 밖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단식투쟁과 농성 투쟁이 대중적으로 전개되었다.

###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의 성과

#### 1) 대중운동으로서의 성과와 과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안을 만들고, 10만 명이 참여한 동의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산재유족들과 전국적인 동조단식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매 순간 노동자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전개한 투쟁으로 입법운동의 역사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대중운동으로서의 성과는 무엇보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과실이 아니라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조직적 구조적 범죄’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회 안에서 의원들끼리 똑딱 만드는 법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안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과제 해결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획기적 재해예방 대책 수립’과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은 감독체계 혁신’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본부로의 승격 추진’등 일파만파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운동본부는 각 소속 조합원 및 회원들을 입법발의자, 전태일 3법 실천단, 10만 동의청원으로 조직하여 법안의 내용을 교육, 선전하고 입법발의의 주체로 조직하는 대중사업을 전개했다. 또한, 전국의 곳곳에서 워크숍, 토론회, 북 콘서트, 노래극 공연, 판결다시보기 토론회, 사진전, 엽서 보내기 등 기획 사업을 전개했다. 입법발의자, 동조단식, 입법촉구 등 다양한 인증샷 운동과 더불어 ‘빠티즈’, ‘같이 가치’ 등 온라인 시민참여도 적극 조직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퇴근길 인증샷’ ‘그 썬물 쓰지마라 챌린지’ 등 다양한 시민참여도 많았다. 또한, 지역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수개월 동안 매주 대 시민 캠페인, 1인 시위를 전국 곳곳에서 전개했고, 포스터, 선전물, 리플렛, 만화, 국회 돔 빔 프로젝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전사업을 전개했다.

10만 동의청원운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민주노총, 종교, 비정규, 법률, 진보정당, 건강권 단체, 청년학생 단위의 부문별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12월 입법논의 시기에는 의료계, 법률계, 산업공학등 전문가 2,100명의 선언, 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성직자 및 신도 선언에 1,562명, 미국, 호주,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6개국 11개 도시의 재외동포들이 제정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 법률단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언론기고, 의견서 발송 등 법안의 쟁점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 강원 삼표 시멘트, 쿠팡 물류센터, 광주 김재순 노동자 대책위,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포스코 중대재해, 이재학 PD 대책위 투쟁, 태안화력 화물노동자 사망, 부산의

질식사, 경동건설 등 중대재해 현안투쟁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요구로 집중 전개했다. 특히, 10만 동의청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코로나 -19라는 집합금지의 어려움을 뚫고 각 현장과 거리에서 노동자, 시민들의 손에서 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발의 대중운동을 전개했다.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사업은 정부와 여당 일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을 무력화시키고, 경제단체와 보수언론의 전 방위적 입법 반대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찬성여론이 1년 내내 지속되고 오히려 높아지는 근간이 되었다.

민주노총은 상반기에는 4.22일 전국 공동행동, 5월과 6월 건설노조와 민주노총의 농성 투쟁, 6월 전국 집중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10월부터는 더불어 민주당 중앙상사, 국회 앞 농성 투쟁에 돌입했고, 건설노조의 전국 농성 투쟁을 비롯하여, 민주노총과 운동본부의 법사위 의원 지역구 사무실,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광역시도당 등에서 항의농성 및 1인 시위가 전개되었다. 노동자 시민 참여의 촛불 행진, 드라이브 쓰루, 촛불행동 등 다양한 방식의 기획투쟁도 전개되었다. 정의당과 산재유족들의 국회 로텐더 홀 농성에 이어 ‘산재유족, 민주노총, 비정규 노동자’ 단식농성에 돌입하자 지역운동본부와 정의당의 지역별 릴레이 동조단식 농성, 1,000인 진보당 동조단식, 민중공동행동 1만명 동조단식, 문화예술, 종교, 연구자,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등의 동조단식이 이어졌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진행한 전태일 3법 입법운동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노동의제로 승리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독자로 전개되다가 전태일 3법 운동으로 묶게 되면서 갖게 된 실무적 혼란도 있었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노동 사안이 대중운동으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 정부도 쉽게 노동개악 추진을 하지 못하는 영향을 주게 되었다. 끝까지 흔들림 없었던 유가족의 투쟁,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기 시작 전 단식 투쟁 결합, 2차 동조단식 투쟁으로 노동자, 시민이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거점이 형성되었다. 자본의 총 공세가 있었지만 노동운동을 넘어서 전체 시민사회의 대중운동으로 이를 막아내고 법 제정을 쟁취할 수 있었다.

## 2) 피해자 운동으로서의 성과와 과제

2018년 산재피해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투쟁 결합과 ‘다시는’ 발족,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피해자 권리 입법 투쟁등 산재 및 재난참사 피해자의 연대가 강화되어 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 준비 단계부터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입법안 및 제정 운동에 대한 논의와 공유를 진행했다. 김태규 대책위, 김재순 대책위등 유족이 적극 결합했던 대책위는 지역운동본부로 전환하는 발판이 되었다.

‘다시는’을 중심으로 산재 유족 및 피해자들은 한익스프레스 이전 산재참사등 중대재해 피해자 지원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토론회, 문화제, 간담회 등에 적극 결합했고, 방송, 언론 인터뷰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법 제정을 요구하는 핵심 주체였다.

특히, 국회 로텐더 홀 농성, 국회 본청과 정문 앞에서 진행되는 단식농성에 높은 결의로 참여하였다. 지역에서 국회안과 밖에서 진행한 산재피해자 유족들의 선도적인 투쟁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사회적 지지와 국회의원 직접 압박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각각의 자신의 현안 중대재해 대응을 넘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집단적으로 나섰다 뿐 아니라, 국회의원과과의 개별적 결합방식이 아니라, 대중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들고 투쟁했다는 점은 피해자 운동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고 높이 평가되어야 할 지점이다.

다만 ‘산재와 재난참사 피해자’ 모임이 구성되고 같이 준비했으나, 법안이 산재사망 중심으로 여론화 되었다. 재난참사의 영역에서는 세월호 사참위법 투쟁, 스텔라이지 대책위 재판 투쟁등 별도의 현안투쟁이 진행되거나, 활동시간 확보에 어려움 등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재난참사 피해자의 결합도가 낮아 법안의 당사자로서의 시각보다 연대차원의 결합으로 되었던 점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한계는 있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사업을 기획 집행하지 못했던 운동본부도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

### 3) 입법안 및 국회 대응 사업 평가

운동본부는 법률팀을 구성하여 ‘제정연대 법안’을 정비 보완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동의 청원 법안’을 준비했다. 법률팀과 상황실장의 공조로 법안에 대한 설명자료 제작 및 배포, 12월2일 국회 공청회 대응, 법안심의 과정에서 법사위 의원 면담 및 설명, 심의 대응자료 작성 및 실시간 대응, 더불어 민주당 정책의원 총회 대응을 진행했다. 법안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운동본부 집행위에서 법안내부 워크숍을 진행하여 법사위 발의된 여러 법안을 분석하고, 운동본부의 법안에 대한 7대 원칙을 논의 정리했다. 법사위 매번 심의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참여하였고, 회의장 바로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과 산재유족들이 피켓팅을 진행했다. 법사위 소위 심의에 김미숙, 이용관님이 진출인 참여도 진행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관하기도 했다. 5인 미만 적용제외가 갑자기 추가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전체회의 마지막까지 양당 원내 대표 항의 면담, 전체회의 발언 등 끝까지 문제제기 했다. 많은 입법운동이 법안 발의까지는 대중운동으로 전개하고, 법안의

심의와 통과 과정에서는 별도의 대응에 한계를 가졌던 것에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안의 심의와 통과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항까지도 국회 회의장 밖으로 외부화 하고, 노동자 시민들의 문자행동이나 국회 압박으로 개별 조문에 대한 대응을 진행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6월에 강은미 의원 입법발의, 9월 운동본부 법안 동의청원, 10월 한국노총 자체 중대산업재해 처벌법 발표, 11월 박주민 의원 법안 발의, 12월 임이자 의원, 이탄희, 박범계 의원 법안발의가 있었다. 운동본부는 박주민 의원 입법발의 과정에서 한국노총 설득을 통해 시민 재해도 포괄하도록 했다. 운동본부 법안을 기초로 한 박주민의원의 입법안이 발의가 되었으나, 50인 미만 적용유예가 포함되었으며, 한국노총과 더불어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의 공동 추진이 되었다. 제정연대에서 운동본부로 이어진 법안 추진 역사와 대응으로 법사위 입법 발의안 6개 법안 중 임이자 의원 발의법안 외에 5개는 운동본부 법안의 주요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었다.

① 한국노총의 2명이상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로만 한정되었던 법안이 철회되고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를 모두 포괄하는 법안으로 민주당 법안 발의, ② 법사위원장 면담을 통해 법사위 공청회 일정이 확정되고, 공청회 진술인 참여 등 대응 진행. ③ 중요 쟁점이었던 ‘일청 책임 귀속’등에 대한 법률대안 대응 ④ 법안 심의과정에서 비영리 법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명기 등 법 조문에 대한 대응 등이 있었고, 성과로 정리된 부분이 있었다. ‘인과관계의 추정’‘공무원 처벌’은 대안 조문을 만들어 대응하였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

특히, 노동부와 여당 정책위가 추진했던 산안법 개정 추진에 대해 법안의 문제점을 신속히 정리하여 양대 노총의 공동명의로 입장을 발표하고, ‘50인 미만 적용유예 반대’양대 노총 공동 입장 발표 등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운동본부도 참여한 ‘국민의 힘 공청회’산안법 개정 추진 대응 등은 더불어 민주당의 3개의 의원 포럼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입장 발표로 이어졌다. 이에 여당 정책위가 산안법 개정 추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방향 선회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 도급/임대분석, 공무원 처벌 구체화 등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기존의 제정연대의 법률안을 단 시간내에 보완하여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깊이 있는 법리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법률 팀 자체 평가가 있다. 그러나, 시간과 인력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



법안 본격심의 시기에 실시간 대응이 진행되었고, 집행위에 보고와 공유는 일정 진행되었으나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

법안의 체계, 위헌성 논란 등 법안 자체에 대한 자본과 보수 전문가들의 많은 공세가 있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통해 기업법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기업처벌 법안으로서의 의미도 매우 크다, 이는 기존의 개인처벌에 근거한 양벌규정으로서의 법인 처벌과는 질을 달리하는 의미 있는 입법적 진전이다.

#### 4) 운동본부 운영과 집행에 대한 평가

2015년 20개 단체로 발족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020년 입법운동의 집중 전개를 위해 지역과 중앙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을 결의하고 추진했다. 약 2개월에 걸친 준비작업 중에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가 발생하여 5월 27일 약 130여개의 단체로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4월의 대전, 세종충남, 충북 지역운동본부 발족을 시발로 하여 속속 지역운동본부도 발족하여 경기, 부산, 울산, 광주, 전남을 포함 8개의 지역운동본부가 발족하여 지역사업을 끈질기게 전개했으며, 경남과 광주의 전태일 3법 운동본부, 제주지역에서도 지역사업이 전개되었다.

운동본부 중앙은 공동대표, 집행위, 상황실장, 기획팀, 조직팀, 법률팀, 산재재난참사피해자 모임의 체계로 각 사업을 진행했고, 팀별 회의를 통해 세부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해 왔다. 지역운동본부는 지역별 사업을 전개하면서 중앙과 지역이 참가하는 집행위 체계에서 공동사업을 논의 결정하고 집행해 나갔다. 재정은 입법발의자들의 기금, 소속 단위의 분담금, 개별 후원금, 416연대 사업기금 등으로 운영되었다. 운동본부 소속단위에 포스터, 리플렛 등을 보내고, 입법발의자에게 소식지를 보내고, 단체별 지역별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운동본부 소속 단위의 결합력을 높이는 사업을 전개했다.

전국 곳곳의 사업이 전개되고, 입법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운동본부는 12월이 지나면서 310여개의 단체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무집행력 보강은 일부에 그쳐 10월 이후 농성투쟁을 비롯 집중사업이 전개되면서 집행위 참여 단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국회 농성 투쟁을 결정한 이후에는 2일에 한번으로 집행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신속한 소통과 집행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무력 한계로 운동본부 대표자와의 실시간 소통 및 역할 강화, 단식 농성 등 중요결정에 대한 운동본부 참여 전체 단위와의 공유는 부족한 점이 많았

다. 법안과 관련하여 7대 원칙의 내용, 법안심의 과정에서 법률팀과 국회 대응팀의 진행보고는 집행위 단위에서만 공유되어, 운동본부 전체 단위와의 소통과 공유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농성투쟁과 국회 대응이 집중되었던 12월 전후시기에는 매 발생 상황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역할 분담이 부족하여 실무 집행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중앙과 지역운동본부의 결합이 매우 느슨했다. 지역운동본부 발족이 이어졌으나, 중앙에서는 결성을 제안한 이후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제안과 집중 지원이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코로나 - 19와 사업 준비 부족으로 지역순회, 노래극과 모의법정의 지역개최 등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도 있었으며, 지역운동본부의 중대재해 대응에 대해서는 1회의 워크숍과 일부 기자회견 지원 등 외에는 적극적인 사업이 전개되지 못했다. 집행위 회의에 지역운동본부도 참여 구성원이지만 일부지역만 결합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운동본부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과의 보고 및 공유도 매우 부족했다. 그러나, 지역운동본부와 정의당 지역의 적극적인 사업은 지자체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법안 찬성 국회의원, 법사위 지역구 국회의원 (장철민, 박범계, 백혜련, 소병철 등) 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이 국회 내 압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직접 압박을 위한 국회 본청 앞 농성, 민주노총과 운동본부 및 각계각층의 대중적 참여가 진행된 국회 앞 농성 등이 진행 되었다. 국회 안과 밖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 이어 말하기 등 각종 사업에 단식 농성자가 교차 참여하고, 동조단식 인증 샷을 본청 농성장에 부착하는 등 공동투쟁의 기조를 분명히 하고자 노력했다. 국회 본청 농성은 정의당의 농성장 설치와 유지에 정의당의 많은 공조가 있었으며, 법사위 심의 공동 대응을 진행했다. 국회 정문 앞 농성은 동조단식을 기본으로 이어말하기, 2,400배, 2차 단식 농성 등 다양한 방식의 기획투쟁이 전개되었다. 국회 안과 밖에서 진행한 강도 높은 투쟁으로 각계각층의 자발적 결합이 이어졌다. 국회안과 밖의 공동투쟁이 진행되었음에도 정문 앞 농성 투쟁보다 국회 본청 단식농성이 '유족의 장기 단식, 국회 및 정치권의 방문' 등으로 언론에 주요 보도 되었고, 본청 단식 농성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산재 피해자의 단식'이라는 강도 높은 투쟁 전개에 대해서는 토론과 평가가 엇갈리는 지점이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가슴 아픈 극한적 투쟁의 전개로 비교적 단기간에 국회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피해자의 단식 투쟁이라는 극한투쟁을 전개해야만 움직이는 한국 정치권의 저열함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8개월 가까이 각종 다양한 대중사업이 전개되었으나, 산재사망에 집중된 점이 많았고, 시민재해나 일터 괴롭힘 관련 피해자 단위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결합시키는 기획사업은 부족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는 11월 박주민의원 입법 발의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는 2021년 1월 법안심의과정에서 쟁점화 되어 사전에 조직하고 준비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는 있었다. 그러나, 운동본부가 주도적으로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를 어떤 사업으로 주체로 조직해 나갈 것인지, 주체 각각의 현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배치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적용유예, 적용제외가 들어오고, 법안에서 공무원 처벌이나 일터 괴롭힘 등에 대한 내용이 적극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

## 5)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법안의 성과

첫째, 꼬리자르기식 처벌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처벌이 도입되었다.

말단 관리자, 노동자등 꼬리자르기식 처벌이 아니라 경영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조직적 구조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법 위반에 대한 처분, 재해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등도 의무로 명시하여 법의 목적이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더 명확해진 점이 있다.

경영책임자의 정의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로 명시되어 있으니 다툼의 소지는 없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에는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졌다. 기업별로 이제 안전담당 조직체계를 세우는 시점에서 안전담당이사로 처벌을 떠넘기면서 발생할 여러 실물적 우려를 주장하며 끝까지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규정은 500인 이상 기업과 1,000위 이내의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적용된다. 대표이사나 안전담당이사나에 대한 규정은 산안법 14조에서 부여한 대표이사의 의무와 연동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사외 하청에 대한 원청 처벌이 적용되고 확대되었다.

2조에서 종사자를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로 확대하고, 제5조에서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적용되고, 사외 하청의 경

우에도 부분 적용된다. 산안법과 달리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전면 적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외회청의 경우에도 산안법에는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지정,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5조에서 원청의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하청과 ‘공동이 아니라 직접 의무 부여’를 명시했으므로, 5인 미만 적용제외나 50인 미만 적용유예 사업장도 원청 처벌이 적용된다.

셋째, 시민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과 원청 처벌이 도입되었다.

공중이용시설, 공중 교통시설, 제조물로 인해 시민에게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원청 처벌이 도입된 것이다. 제조물로 인한 중대재해는 가슴기 살균제 참사 이후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 보다 ‘유통, 판매중인 원료’까지 확대하고, ‘제조물의 관리상의 결함’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제조물 책임법에서 민사상의 책임만 되던 것에서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제조물 책임법의 3배보다 증가한 5배 이내로 도입된 것이다.

넷째, 하한형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고, 부상과 질병에도 적용된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형 형사처벌과 가중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게 되었다. 부가적으로 공표제도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도입되었다. 형량이나 배상의 한도가 낮아져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다각적인 처벌이 진행된다는 점은 진전된 측면이 있다. 일단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업무로 인한 사고성, 직업병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이 적용된다. 특히,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의 경우에만 적용해 왔으나, 부상과 질병에도 확대되었다. 메탄올 중독 실명등과 같이 사망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기간, 요인, 인원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직업병의 종류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문제다.

다섯째, 피해자의 권리 보장, 전문가 심리절차 참여 제도 도입되었다.

기존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와 재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반영될 경로가 없고,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다. 제정된 법안에는 기존의 일부 절차를 도입하여 심문과정에서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소송심리절차에 전문가 참여 등을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절차가 일부 도입되었다.

##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의 과제

### 1) 법안의 한계와 과제

첫째, 적용제외, 적용유예로 적용대상이 반쪽짜리인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산업재해 5인 미만 적용제외>와 <중대 시민재해 소상공인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적용유예>가 도입되어 법의 적용대상을 반쪽으로 동강내 버렸다. 원청 처벌은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책임자 처벌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가능하다는 법리적 실물적 주장이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20%를 넘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징역형이 실제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생명과 안전의 영역까지 차별을 받게 되는 것으로 법의 기본 정신이 훼손되었다.

법사위에 중대재해 예방과 지원 대책에 대한 정기보고가 명시되었으나, 이후 과정에서 얼마나 책임있게 집행될지는 매우 불명확하다. 특히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50인 미만 예방대책은 예산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사업의 내용은 매년 해 오던 것과 동일하고, 예방체계 구축에 대한 구조적 근본적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대책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과제가 제출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는 심의과정에서 '중대재해가 감소되지 않으면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정부 부처가 동의하는 것으로 회의록에 남겨진 정도이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발주처 공기단축,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 핵심 조항이 누락되었다.

<발주처의 공기단축에 대한 처벌> <공무원 책임자 처벌> 조항이 삭제되고, 일터 괴롭힘 예방의무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공무원 책임자 처벌> 의 경우 중대재해에 있어 공무원의 부실한 감독, 불법 인허가 등이 주요한 사고원인이고, 이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해 왔다라는 문제는 다 동의를 하면서도 입법안에서 삭제되는 결과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건설업, 조선업 공사의 주요 원인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도화선이 된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의 주요 원인인 <발주처의 공기단축> 이 도입되지 못한 것은 핵심조항이 또 다시 누락되는 결과로 남았다.

일터 괴롭힘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부의 책무로 예방조치의 기준 마련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 조항이 경영책임자의 의무 조항으로 명시되는 작업 추진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형사처벌의 하한형은 도입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처벌수위가 낮고, 다양한 처벌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

자본의 공세가 집중되었던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하한형은 도입되었으나, 형량이 낮고, 매출액 대비 벌금형과 벌금형의 하한형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은 도입되었으나, 영업정지, 이행관찰 등 다양한 제제조치는 도입되지 않았다. 이에 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와 낮은 벌금형의 남발에 대한 우려는 남게 되었다. 제조물 책임법에 3배 이내로 있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산재와 시민재해 전반으로 5배 이내로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했다.

넷째, 인과관계의 추정, 양형절차의 특례가 도입되지 못했다.

기간이 중대재해에 대한 재판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인과관계의 추정> 이다. 인과관계의 추정은 외국에서 기업 살인법이 제정된 출발점이기도 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야당과 보수전문가들의 주장에 밀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도입되지 못했다. 법안의 원안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구체화 된 측면은 있으나,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이 도입되지 못함으로 실질 재판과정에서의 한계로 적용사례가 생기지 않거나, 사례는 생겨도 양형절차 특례등에서 보완하려고 했던 재판부의 인식에 대한 보완 등이 해결되지는 못했다. 제정된 법안이 실제 경영책임자 및 원청 처벌과 재해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안 제정보다 이후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제정된 법 문구 자체도 있으나, 수사, 기소, 재판과정에서의 구현이 더욱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수사, 기소, 재판과정에 대한 개입과 감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처벌대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모호해진 법안의 명칭

법안의 명칭에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이 사라지고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되었다. 법안 적용대상이 민간기업 뿐 아니라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비영리 법인, 정부 및 공공기관, 공기업 등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전체가 대상임이 드러나게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주되게는 심의과정 전반에서 <기업처벌>에 대한 자본의 공세에 밀린 국회의 타협지점의 산물이며, 중대재해가 기업의 조직적 범죄임이 모호해진 명칭으로 정리된 지점이 있다.

- 위와 같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계와 과제를 담고 있고 하위법령 및 법 개정 투쟁의 과제를 갖고 있다. 이 투쟁 또한 법령 정책대응이 아니라, 법 제정과 같이 대중적 참여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 또한,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법안이 제정된 국가의 전례에서 법 제정만큼 중요한 것은 수사, 기소, 재판과정을 통해 법의 실질 적용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왔다. 경영책임자, 원청의 의무 위반을 밝히는 과정은 현행의 수사, 기소 실무력으로는 해결되기 매우 어렵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수사 및 기소 실무 지침 및 매뉴얼과 인력의 확보로 법안이 사문화 되지 않고, 법안의 취지대로 실제 적용 처벌할 수 있도록 내용에 개입하고 감시해야 한다.

## 2) 기업의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참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내 10대 로펌들은 전문팀을 꾸리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사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대표이사가 처벌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 피해자와 합의 보상도 어려워니 법률 자문계약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 자체의 예방관리 체계 정비 수립과 동반되는 것인지, 책임 빠져나가기 산공으로 나갈 것인지의 기로에 또 다시 서있다. 대형 로펌과 법률 자문을 맺을 정도의 빈익빈 부익부 법률대응 양극화 현상도 또 다시 예견된다.

이제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실제로 준수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조직체계 편성에 나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있었으나 현장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던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법 조문이 이제 현장에 살아서 작동하는 법 조항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조항들이 그렇다. 그 과정을 함께 만들고 이행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노동조합이고, 노동자이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준비 1년동안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정에서 비 영리 법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당사자라는 인식이 얼마나 척박한지가 드러났다. 법이 공포된 이후에도 학교가 공장이나며, 법 적용을 거부하는 학교 교장, 교육감들의 인식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제 당사자로서의 인식도 없었

던 많은 분야에서 노동자, 시민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규정, 예산, 조직체계 정비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또한, 노동자, 시민들이 이 과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획기적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 3) 중대재해 공동대응 체계 구축 및 정부감독체계 개혁

중대재해를 감소하는 가장 중요한 대응은 <중대재해 공동 대응체계 구축> 이다. 이는 지역별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상설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역의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

중대재해발생시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개입이 진행될 때 수사, 감독, 기소, 처벌과정에서 현장의 제대로 된 현실이 반영되고, 실제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부의 준비는 매우 미약하다.

중대재해에 대한 초기 대응, 피해자 지원, 수사 및 기소와 처벌까지 대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토대 구축 및 대응체계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법 제정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고, 그 중요한 방안중의 하나가 정부 감독의 혁신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으나,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개속이다. 노동자, 시민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정부감독은 어떤 위상과 내용으로 획기적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과 입장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 또한, 외국의 안전보건청이 아니라, 한국의 고용구조, 산업구조,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양태에 입각한 실물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토론 1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과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과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직업환경의학전문)

이번 법률안의 통과는 한국사회의 안전, 특히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진전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민 10만명이 직접 참여한 국민동의청원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노동자의 관점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인 처벌의 벌금 하한형 및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 등 처벌완화를 비판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기업의 부담의 증가, 의무대상 별로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성 결여, 예방보다는 과도한 징벌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음.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는 모두 각각의 근거와 논리가 있음도 사실이다.

안전(Safety)을 그 사회의 통념과 가치라는 맥락 속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으로 위험(Risk)을 관리하는 것으로 개념화 할진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과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최근 수년간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다. 압축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과정에서 잇따르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재해를 오늘에 와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미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락이나 협착으로 인한 산재사망이나 가슴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무책임한 기업의 이윤추구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제도를 넘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인 것이다. 다양한 법학, 법이론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차원으로 전개된 입법과정을 통해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있어서 기업의 책임과 실질적인 기업책임자 처벌이라는 사회적 쟁점이 형성되고 문제의식이 높아진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요구된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일터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는 노동자들의 손상과 죽음을 ‘법’만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법이 있어도 그것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개선을 이끌어낼 줄 아는 관료가 드물었으며,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할 전문인력이 부족했고 있다해도 원인의 원인이 되는 구조까지 들여다 보지 못했다. 구조적 원인을 찾지 못한 재해조사결과는 기존의 기소관행에 익숙한 검사들에게 기업과 사업주들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만들고,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는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도 재판에서 내려지는 처벌은 기업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노동자와 그들을 대표하는 조직들은 이번 입

법을 계기로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입법 뿐 아니라 행정, 사법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감시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문제가 국회를 통한 입법,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법논리 구성 상의 논쟁에만 매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노동안전보건운동진영의 과제로 삼기를 제안한다.

### ○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

먼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통해 형성된 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든 산업안전보건법이든 법의 기본 취지를 살려 중대재해에 있어서 기업의 책임,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구조적인 부분까지 따져서 원청을 포함하여 기업경영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와 법 인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심층적이고 제대로 된 재해원인 조사가 그 출발이다.

### ○ 재해조사와 대응에 대한 실질적 역량을 강화해야한다

더불어서 재해조사에 대해서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금속, 건설, 공공노조 등 공조직 노조에서 노동자 건강권 관점에서 재해조사와 그 대응에 대한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는 일선 노동조합 활동가, 산별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조골간 조직, 노동안전보건운동 조직을 포함한 시민운동 진영의 자원을 잘 동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하난.

### ○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근간을 바로 세우자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는 법자체의 완결성뿐 아니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확인하기 위한 준거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관계법령을 실질적 차원에서 정비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산업구조 속에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각각의 수준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할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분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간 정부는 안전보건 행정을 규제를 중심으로 수행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교한 제도의 구성과 빈틈없는 적용이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다. 보여주기식, 주먹구구식의 규제행정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와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독려하기보다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찾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제 이번 입법을 계기로 기업에서도 법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을 찾기보다는 실제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이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근간이 되는 법으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청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할 권리 옹호기관으로 제대로 서도록 해야

또한 최근 논의가 불붙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과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 과정이 공론의 장에서 열린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압력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제가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노동안전보건 행정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견결한 옹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다. 그래야만 생산성, 임금, 고용, 노사관계 등등에 휘둘리는 고용노동부에서 분리독립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며, 안전보건공단에서 늘상 호소하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만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의 미비로 인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일어야말로 ‘노사정’이 함께 해야 할 일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기업, 정부, 노동자,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하는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토론 2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의미와 향후과제 토론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 발제자들의 의견에 동의함. 발제자들의 분석에 의해 지난 1월8일 통과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한계가 명확해 짐
- 안전문제가 중요한 경영상의 의무이며 안전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최고경영자 또는 안전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을 현실화 한 점, 하청 및 특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원청이 직접적인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점 등이 성과임.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투쟁이었음도 분명한 사실임

## 2.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소상공인 제외, 공무원 처벌제외 등에 대한 논리적 모순

- 그러나 한계점도 잘 지적되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왜곡을 낳을 수 있음.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진을 안전을 소홀히 다루어도 괜찮은가?.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진은 안전을 챙길 수 없을 만큼 영세하거나 혹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음. 과연 그런지에 대해 더 많은 토론과 분석이 필요함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목숨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소중한다는 원칙을 차치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진들도 충분히 안전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사업주 교육 등을 통해 인지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동일하게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왜 제외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자가 구속될 경우 폐업이 불가 피해서, 경제를 고려한 선택이라면 애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선 안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임. 그렇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진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소상 공인 등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므로 처벌이 우선 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라면 사용자들에 대한 역차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부터 상대적 공정성에 대한 이슈를 일으킬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처벌을 아예 삭제한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려움. 중대재해에 있어 공무원의 불성실한 업무와 무책임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함. 특정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처벌에서 제외되어서는 곤란함. 특히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발주량도 적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공무원의 사기를 위축하거나 혹은 직접적인 관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에서 제외했다면 이는 재고가 필요함

### 3.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 1) 기업: 간접고용 축소를 통한 고용의 정상화

- 중대재해는 처벌이 목적이 아닌 예방이 목적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강한 처벌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함. 따라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줄이는 근본대책이 요구됨. 중대재해의 대부분은 간접고용 형태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원청의 과도한 작업 일정과 안전을 무시한 작업 지시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하청노동의 특징에서 비롯됨. 따라서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기업의 간접고용에 대한 의존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함

#### 2) 정부: 예방활동과 사각지대의 해소 노력

-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기업안전에 대한 관리 및 감시 역할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논의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조직 신설이 중심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함.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고조사, 개선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음. 현재의 근로감독(산업안전)만으로는 예방 활동에 어려움이 존재함

- 5인 미만 제외 조항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삭제하거나 기간을 유예하여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를 필수로 하도록 함
-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사각지대는 농어촌 사각지대임. 20톤 미만의 어선 및 농촌의 경우 산업안전 관련 근로감독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임. 사업장 중심의 중대재해를 실제 취약한 노동자가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확대할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향후 법 개정 시 포함해야 함

### 3) 노동조합

- 산업안전관련 국회 및 시민의 이해도가 높은 만큼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함. 중대재해 발생 현황, 원인에 대한 연구, 안전대책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시적인 기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음.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를 초월하여 재정과 인력을 분담하여 상시기구를 만들어 노동시민사회 차원의 관리와 감시 역할을 수행



토론 3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법률쟁점

손익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법률쟁점

-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sup>8)</sup>

이 법은 '제정법'이므로 많은 부분에서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글에서는 주요한 3가지 쟁점에 관하여 간략히 검토하겠다.

이 법의 부족한 점,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 점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겠다(적용범위, '임대',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등)

첫째, 중대산업재해 개념 - 제2조 제2호 가, 나, 다목(시행령)

둘째, 경영책임자등 개념 - 제2조 제9호 가, 나목

셋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시행령), 제2호, 제3호

## 쟁점 1: 중대산업재해 개념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피해정도에 따라서 처벌대상을 정하고 있다. 상기 산업재해는 사고와 질병을 가리지 않으므로 질병을 배제할 근거가 없고(과로성 질환, 근골질환, 직업성 암, 정신질환), 정신질환의 결과물인 사망(자살) 또한 배제될 근거가 없다. 다만 행위와 결과간의 상당인과관계,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여부가 문제될 따름이다.

시행령에서의 과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을 어떻게 정할지이다. 산안법은 “산업재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자건강권 팀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법률팀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첫째로 “동일한 유해요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이다. 좁혀서 생각한다면 한 화학물질(가스, 증기, 분진)에 동시에 3명이 노출되어 질식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유해요인에는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도 포함되므로, 과로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과로’,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부적절한자세/업무량/업무강도/휴식시간부족’,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구조적 문제/괴롭힘’도 배제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다만 법조문에서 “**급성중독 등**”이라고 정해놓아 급성중독만 한정된다고 주장될 여지도 상당하다.

둘째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이다. 가목은 사망이고, 나목은 부상자 발생이어서 초진일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겠으나, 다목의 경우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행위를 포착할지가 문제 될 수 있다.

## 쟁점 2: 경영책임자등 개념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보려면, 그에 앞서 누가 보호가 되는지를 봐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종사자”라고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목)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나목),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다목)라고 정하였다. 이로써 산안법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일정한 유형의 ‘특고노동자’를 뛰어넘고 개인사업주인 수급인도 보호대상에 포함되며, 그 수급인과 종사자 관계에 있는 경우도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위험의 창출에 따른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취지에 일정부분 부합하게 되었다.

다만 운동본부안에서는 위 나목에 “임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건설업에서 건설기계와 관련하여 원청이 업무를 도급준 것이 아니라 장비를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면피하는 경우를 포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국회논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우 장소나 장비를 단순히 빌렸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곤란하고 처벌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의 해석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되었다.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영책임자에 관하여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가목)”,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나목)”으로 정한다.

가목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부분을 보면 이른바 ‘사장’이 아닌 ‘회장님’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만 가목의 앞부분에서 “사업을 대표하고”라고 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장님’을 어떻게 포섭시킬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과제로 남아있다. 다만, 명목상 대표자만 처벌하는 것 또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또 그런 취지라면 가목의 뒷부분은 없어도 무방하므로 이는 결국 사장 뒤의 ‘회장님’의 처벌을 의도하는 조문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고로 이 부분은 운동본부안 제8조 다목에서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한 내용을 이어받은 것이다.

참고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는 기업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2차적으로 기업의 이사 등 상위관리자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consent), 묵인(connivance), 방치(neglect)한 경우에 처벌하는 형태이다(전형배, 15~16면).

그리고 “또는” 이하의 부분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대표자와 더불어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운동본부안에서는 “대표이사 및 이사”라고 하여 “이사”급의 임원만, 그것도 대표이사와 동시에 처벌되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외이사 등 이사의 업무영역을 가리지 않고 처벌될 수 있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담당자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현행 산안법 제15조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포섭될 여지가 있고, 또는 앞부분의 ‘회장님’ 대신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처벌될 여지를 남겨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 3. 쟁점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범위

당초 운동본부안의 제3조 제1항에서는 포괄적 의무를 지우고 제2항에서는 ‘예시’적으로 반드시 처벌대상이 되는 개별법 조항상 의무내용을 직접인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에서는 의무 내용에서 포괄적 의무조항과 예시적 조항을 삭제하고 ‘열거’방식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규제 대상 행위가 다소 좁아진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개별 사건에서의 법해석과 앞으로의 투쟁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포괄적인 의무를 짐을 전제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이 열거방식으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통하여 법 취지를 살려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뒷부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라는 조항을 둬으로써,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인 의무가 아닌 상황에 맞는 조치의무를 지운다고 해석이 가능토록 하였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고 하는 운동본부 주장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사업을 위하여 위험(risk)을 만든 즉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현실화된 위험의 결과물인 중대재해에 관하여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책임주의(責任主義)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기존의 중대재해 사건에서는 개별법상 처벌규정의 적용 외에도 보충적이고 포괄적으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근거로 처벌해왔다. 그리고 대법원은 여기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사람의 생명·신체 위험방지에 관하여 개별법상 의무외에 포괄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근로자인지 특고노동자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지, 그 소속이 원청인지 하청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실제로 처벌도 그렇게 되어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남을 뿐이다.

참고로 10만명당 사망자 0.7명으로(한국은 4.6명) 산재예방 선진국인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모든 사업주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에서(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자신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및 복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포괄적인

의무를 지운다. 그리고 영국의 법원은 이 조항에 관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체로 이미 안전보건에 관한 위험을 제거하여야 할 의무위반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러한 결과에 기초한 접근법이 산안법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면, ‘사업주가 당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당시의 조치보다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한다는 태도이다(이상 전형배 외,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분석, 37~42면 참조). 즉 영국은 사업주에게 포괄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함으로써 사고발생 자체로 인하여 주의의무위반이 있음을 입증되었다고 보고, 다만 사업주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조치를 했음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한다는 태도이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이미 피해자의 소속/신분이나 가해자의 지위를 가리지 않고, 범죄결과의 원인에 관하여 누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책임을 지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해당 조문도 이러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태도를 계승하는 것이고, 각 호와 시행령의 내용도 수범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하여 특정한 경우를 열거한 것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매일노동뉴스 2021년 2월 4일

‘구의역 김군’ 판결을 다시 보자. 20세 김군은 스크린도어 정비업체인 은성피에스디 소속으로 2016년 5월 28일 2인 1조 작업이 필요했으나 혼자서 구의역 승강장 9-4지점 선로 내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중 역사 내부로 진입하는 열차와 충돌하여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해당 업무는 본래 서울메트로의 업무이나 오세훈 시장 시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외주화되어 하청업체가 떠맡게 된 것이었다. 김군의 사망으로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 서울메트로 대표이사 이정원 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고단1506 판결).

적은 벌금액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갑 중의 갑 갑인 원청사의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았다는 부분이다. 법원은 2015년 8월경 강남역에도 똑같은 원인의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원청 또한 2인 1조 작업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불가능함을 알았으리라고 보았다. 이에 하청이 원청에게 2015년 12월경 정비원 28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원청은 17명만 증원했다. 오히려 원청이 증원을 이유로 스크린도어 센서 점검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증원된 17명 중 9명만 정비원으로 배치함으로써 2인 1조 작업은 더더욱 불가능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원청의 대표이사로서는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고를 막으려면 2인 1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 구의역 김군 사망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 형사책임을 물은 것이다. 사고 당일의 개별적인 의무위반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혀냄으로써 원청 대표이사의 처벌이 가능했던 것이다.

구의역 김군 형사판결은 내년 1월 27일이면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리를 무기로 산안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소와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업무”라는 두 글자 안에, 하청이 자신의 ‘근로자’를 위해서 산안법상 의무를 진다는 좁은 내용부터, 원청이 하청 노동자나 특고노동자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써 원청 대표이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비롯한 구조적인 원인을 탓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구의역 김군 사건에만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을까. 아니다. 고 김동준, 김재순, 김용균, 김태규, 이한빛 사건을 비롯하여, 여론의 주목을 미처 받지 못한, 그래서 사소하게 취급된 수많은 사건들도 구의역 김군 사건처럼 가을날 고구마 캐듯이 상세하게 파보면 구조적인 원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는 힘없는 을이 아닌 원청사인 갑. 그중에서도 갑인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분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보다 더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앞으로의 수사, 기소, 처벌에 있어서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호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거나, 제4호에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라고 정한다. 그렇다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무엇이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는 법 시행일까지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그 작업이 있어야 갑의 책임을 묻는 수사, 기소, 판결이 가능할 것이다.

#### 4.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한다. 기존 산안법 등 특별법의 법조문의 법정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선고형이 낮아 일반예방 효과(위하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산안법 재범률도 97%로 일반 형법 범죄의 43%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아 특별예방 효과도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제대로 된 책임자를 가려내고 또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책임소재를 엄격하게 물음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로 인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5. 나가며

이 법에는 여러 문제점과 단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이 법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수사, 기소, 처벌에 이르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통하여 정부의 입법/사법/행정활동에 관한 견제를 함으로써 산업재해/시민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미진한 점은 법개정 투쟁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것이다.



---

토론 4

## 포스코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 포스코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방성준

## I. 포스코 포항제철소 중대재해

### 1. 제품부두 하역기 끼임 사망사고

#### 1) 사고 경위

2019년 2월 2일(토), 직영노동자(포스코), 제품부두 35톤 하역기에서 14시부터 인턴에 대한 OJT교육을 실시하던 피해자가 인턴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고 혼자 기계실 점검을 위해 16시30분경 Grap 상부로 이동,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고 17시41분경 인턴이 현장에서 쓰러져있는 재해자 확인

#### 2) 사고원인 및 주요 사고경과

##### ○ 사고원인:

- OJT교육을 받는 인턴의 운전연습과 점검이 1인 작업으로 이루어졌음.
- 정비, 점검, 보수 작업 등을 할 때 중단되었어야 할 하역기가 가동되었음
-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일 경우 안전한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가 있어야 함에도 사고현장에 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 신고:사내119 신고-사고 발생 확인(17시41분경) 후 약 5분 뒤인 17시46분, 사외119 신고-사고 발생 확인 후 1시간 5분 뒤인 18시46분

○ 사고보고:포항지청은 사고 발생 확인(17시41분경) 후 1시간 20분 뒤인 19시에 보고받음

○ 작업중지명령:사고 발생 2일 뒤인 2019.2.4.(월) 17:00 포항남부경찰서에서 부검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 해당 크레인(제품부두 하역기 12호기)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

### 3) 문제점

- 포스코의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노동부 포항지청의 대응 (참고자료 1,2 참조)
  - 사고발생 직후 포스코에서 발행한 사고 속보에는 [포항지청감독관(최대진) 현장조사 \*현장 확인 결과 산업재해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함으로 명시되어 있음
  - 2월8일 이정미 의원실에서 포항지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2월2일 개인질병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있으나 부검 결과에 따라 대응하기로 본부에 구두보고 했다는 기록이 있음
  - 사고 이후 2월15일 이루어진 포항지청장과의 면담(금속노조 미비실장, 미비국장 포항지부장, 노안부장, 포스코지회장 참석)에서 감독관이 ‘산업재해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
  - 포항지청은 면담이후 답변서를 통해 포스코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허위사실유포 관련 조치와 처벌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특별감독 실시에 대한 왜곡, 축소시킨 집무규정의 해석 (참고자료 1 참조)
  - 금속노조 포항지부의 특별감독 요구에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특별감독 실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부함.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 제10조(감독대상)

- ③특별감독은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④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독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

- 작업중지와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법에 대한 왜곡, 축소시킨 해석
  -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종합진단명령(안전보건진단)을 요구했고 포항지청은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에 해당 할 경우 조치한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음 (참고자료 1 참조)
  -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사고 당일(2월2일) 유선으로 작업 중지여부를 확인했고 산재예방과에서는 산재인 것이 확인되지 않아 즉각 작업 중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
  - 포스코 측의 산재가 아니라는 사고속보 이후 유가족들의 부검이 이루어졌고 부검 내용(강한 충격에 의한 복부내 출혈 발견)이 확인되고 나서야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음. (2월4일)
  - 동일 작업이 이루어지는 하역기에 대한 해석을 축소시켜 해당 하역기만 작업중지 시킴

## 2. 소결공장 집진기 배관 추락 사망사고

### 1) 사고 경위

2020년 12월 9일(수) 13시43분경, 하청업체(에이스엠)의 하도급업체(동현) 노동자, 3소결공장에서 집진기 배관(직경 4미터) 보수 공사 중 부식된 부분이 파손되어 추락, 이후 추락한 배관에서 집진기 기류의 역방향에 위치한 7미터 수직배관 하부로 추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 2) 사고원인 및 주요 사고경과

#### ○ 사고원인:

- 현장 순찰 중이던 공장장이 사고발생을 확인하고 나서야 집진기 가동이 중단됨.
- 현장에 3명의 작업자가 함께 작업을 했지만 3인1조의 작업이 아니라 각자의 작업을 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짐. 실질적인 2인1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신고:사내119 신고-사고 발생 확인(13시49분경) 후 4분 뒤인 13시53분, 사외119 신고-사고발생 확인 후 18분 뒤인 14시7분

○ 사고보고:사고발생 확인 후 약 36분 뒤인 14시25분 포항지청으로 사고 보고됨

○ 작업중지명령:사고 확인 후 현장에서 '3소결 집진기 배관 보강 작업 일체'에 구두 작업중지 명령 내림. 이후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 토대로 집진기, 배관 23곳에 유사동종 재해 우려 있어서 작업중지 명령 확대

### 3) 문제점

#### ○ 왜곡, 축소시킨 집무규정의 해석

- 금속노조 포항지부의 특별감독 요구에 근로감독과 집무규정의 해석을 배제하고 3인 이상 사망해야 진행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1명 사망에 대한 특별감독은 거부함.

#### ○ 사망사고에도 보안으로 막혀버린 현장

- 포항지청장에게 유족들의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포스코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음

- 유가족과 금속노조는 12월 11일과 15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현장방문에 나서고 나서야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었음
- 현장 방문시 사고현장을 취재하려는 기자들 동행을 거부함
- 현장으로 가는 과정에 촬영을 막기위한 핸드폰 렌즈에 스티커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짐
- 사고현장에서 금속노조의 동선을 통제함

○ 사고 재발방지대책보다 중요시 된 생산과 이윤

- 12월16일 정의당과 함께 방문한 현장에는 이미 사고 배관의 보수가 마무리 되어 있었다.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져있었지만 배관 보강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폭발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포항지청과 포스코의 협의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함

○ 왜곡, 축소시켜 이루어진 작업중지

-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집진기 가동에 대한 작업중지 없고 '배관 보강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시켰음. 23곳의 배관, 동일한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도 동일한 해석으로 이루어짐

○ 정기감독의 감독기관인 포항지청과 피감독기관의 뒤바뀌어진 관계

- 2020년 12월17일부터 2년 말까지로 계획되었던 정기감독이 감독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 2021년 1월11일까지로 연장됨
- 감독기간 포스코지회 3명, 포스코사내하청지회 5명의 간부들이 매일 각 1명씩, 총 2명이 감독에 참여함
- 2020년 12월29일 포항지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1월11일 강평에 감독참여 인원인 8명이 모두 참여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음. 면담이후 산재예방과와 협의하여 연장된 감독기간 중 2021년 1월7일, 8일에 참여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음
- 2021년 1월 6일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포스코 안전방제그룹 이00 파트장과의 통화로 '감독과 강평에 참여시키는 권한은 포스코에 있으며 참여시킬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결국 참여하지 못했음

### 3. 사내 도로 내 출퇴근 사망사고

#### 1) 사고 경위

2020년 12월 23일(수) 18시44분경, 외주업체(한진) 노동자, 항만 앞 도로로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재해자가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바퀴에 끼어 사망한 사고

#### 2) 주요 사고경과

##### ○ 사고원인 :

- 사고 도로에는 신호등, 가로등, 신호수, 차선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음
- 작업하는 차량과 오토바이, 자전거,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이용하는 도로였지만 각각의 전용 도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출퇴근 시간에도 작업하는 차량 혼재되어 이동되었음

##### ○ 신고 : 확인 못했음

##### ○ 사고보고 : 사고발생 약 40분 정도가 흐른 뒤인 19시21분경 포항지청에 유선보고됨

##### ○ 작업중지명령 : 사고발생 하루 뒤인 12월24일 부분작업중지(포항제철소 내 원료3-7도로 삼거리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명령 이루어짐

### 3) 문제점

##### ○ 늦게 이루어진 작업중지명령

- 12월24일 지청장과 면담에서 작업중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포항지부의 문제재기가 있는 후 12월24일 저녁에 작업중지명령이 이루어진 것 확인

##### ○ 훼손된 사고 현장

- 포항지청은 사고조사 중이라고 했지만 사고발생 4일 뒤인 27일 유가족들이 확인한 현장은 오토바이는 길가로 치워져 있었고 바닥에 사고위치를 표시해둔 것도 확인이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음

→ 사고 당시 없었던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새것의 도로반사경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었음

○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내 도로의 안전조치

→ 사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명백한 산재임

→ 그럼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사내도로의 안전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사고 발생 후 14일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장례를 마무리 할 때까지 장례식장에는 포스코 뿐만 아니라 재해자 소속의 한진, 사고차량 소속의 한중 관계자 누구도 찾아오지 않음. 장례이후인 지금까지도 사과와 보상문제를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보통의 사망사고 직후의 포스코와 관련업체의 대응방식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됨

○ 사내 119와 포스코 관계자들의 부실한 초동조치

→ 사고 발생한 후 재해자는 사고 당시 약 40분 정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사고 트럭 운전기사를 통해 확인

→ 사내 119는 트럭을 들어 재해자를 구조할 수 있는 어떠한 장비도 없이 사고현장에 왔고 상당 시간 초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포스코 관계자들은 사고 차량 운전기사에게 개인 신상 확인과 차량 안에 있는 출입증 반납을 여러차례 요구함

→ 사고 트럭 기사는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포스코 내 보안규정으로 위의 내용들을 기록 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도 남기지 못했음

○ 사고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대책 남발 (참고자료 3, 4 참조)

→ 사내 출근 사망사고 이후 2021년 1월6일 [굿드라이버 활동 강화 추진]이 시행됨. 핵심내용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을 시 출입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임

→ 2월10일 [이륜차 운행금지 시행 안내]가 현장에 뿌려짐. 포항제철소 교통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 운행 금지에 대한 내용임

#### 4.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 협착 사망사고

##### 1) 사고 경위

2021년 2월 8일(월) 9시38분경, 하청업체(장원) 노동자, 연료부두 내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 컨베이어에 철광석을 붓는 언로더가 작동하여 협착 사망한 사고

##### 2) 사고 원인 및 주요 사고경과

###### ○ 사고원인:

-하역기는 컨베이어벨트 4개 라인을 선택적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을 하더라도 다른 컨베이어벨트를 선택해서 가동함. 하역기와 컨베이어벨트는 연개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가동되는 시스템으로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와 하역기 가동 중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음.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일 경우 안전한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가 있어야 함에도 사고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 ○ 신고:

○ 사고보고: 사고발생 약 1시간 10분 뒤인 10시45분 포항지청으로 사고보고됨

○ 작업중지명령:사고발생 작업(컨베이어 유지·보수) 및 유사작업(3개소)에 대해 구두로 부분작업중지명령을 함

##### 3) 문제점

○ 사고 재발방지대책보다 중요시 된 생산과 이윤

→ 12월16일 정의당과 함께 방문한 현장에는 이미 사고 배관의 보수가 마무리 되어 있었다.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져있었지만 배관 보강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폭발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포항지청과 포스코의 협의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왜곡, 축소시켜 이루어진 작업중지 (참고자료 5 참조)

→ 해당 하역기와 컨베이어벨트 부분작업중지 명령함

→ 하역기와 컨베이어벨트 자체의 작업이 아닌 '컨베이어 유지·보수'작업을 중지시킨 것으로 2020년 1월 개정된 산안법의 동일작업 중지보다 확대된 해석한 것처럼 유사작업 (3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를 시킨 것으로 명시했음.

→ '컨베이어 유지·보수'작업 중지임에도 하역기와 컨베이어벨트 한라인을 작업중지시킨 것은 생산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로 판단됨.

○ 항만 하역기에서 반복되는 사고 (별도자료 1 참조)

→ 한 공간에서 여러작업을 여러 업체가 나누어 작업을 하고 있어 서로 간에 소통부족으로 사고발생 확률이 높음

하역기와 컨베이어벨트 가동	포지트
하역기, 컨베이어벨트 롤러 정비	장원
컨베이어벨트 정비	파일산기
수신호	항운노조

→ 이번 사고 현장에서 이미 두 차례나 사고가 발생했음. 하지만 안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위험은 방치되고 있음

2020년 9월22일	하역기 운전실과 선박 선체 일부가 충돌하는 사고 발생. 중대재해가 될 뻔한 큰 사고였지만 안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해자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음
2021년 2월1일	하역기 간에 충돌을 막기위한 센서 고장으로 충돌사고 발생. 재해자는 회사측 팀장에게 욕을 듣고, 다른 근무지로 대체 투입되었음.

→ 반복되는 사고에도 근본적인 안전조치(충돌센서, 무전기제공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음



## II. 포스코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위해 해온 요구

○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포스코지회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동지들과 함께 포스코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부 포항지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의 요구들을 해왔다.

- 원하청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고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특별감독, 안전보건진단
- 작업중지명령 확대와 작업중지 해제과정에 노조 의견 반영과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 공개 그리고 책임자 처벌
- 사망사고를 막기위한 금속노조, 노동부 포항지청, 포스코가 참여하는 노사정 테이블 마련
- 일상적인 위험한 작업과 현장 그리고 산안법 위반 등을 신고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시스템 구축

○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 노동자들의 요구에 포항지청은 동의, 공감의 의견을 내놓았지만 매년 포스코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포항지청의 무대책 속에 사망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 포스코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 번째, 탄압과 통제를 통해 사고를 막겠다는 무책임한 포스코의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가보안시설을 앞세우며 어떤 사업장에서도 할 수 없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통제를 당연한 듯이 자행하고 있다. 사내 사진 촬영을 금지시켜 위험한 작업과 불법적인 것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탄압과 통제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조차 막혀있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노동안전시스템에 대한 개혁의지는 빼놓은채 노동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 이러한 포스코의 태도가 결국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노동자의 참여 속에 사고보고, 사고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과 생명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가 배제된 노동자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 모든 과정과 절차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들어갈 때만이 포스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포스코의 이윤중심 경영에 따라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지도, 관리, 감독 역할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대한 포스코 자본 권력 앞에서 왜곡, 축소된 법과 재량적 권한이 포스코 노동자 죽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이 중심 포스코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게 할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역할의 정상화가 이루어 질 때 가능 할 것이다.

### Ⅲ. 포스코를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의당이 주장해왔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사망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뺀 것은 노동자 생명의 소중함조차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거대 양당의 시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 포항지청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인 대표적인 살인기업 포스코를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관리, 감독, 지도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직무유기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공무원의 법 적용대상 제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무용론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포스코 내 원청을 제외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처벌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 포스코가 법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거나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이어져 남아있는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중 처벌 대상의 정의는 이후 포스코에서 사망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경영책임자를 정의해놓았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사망사고로 온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 2021년 2월 17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 중 일부 내용

→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분들이 요구하는 추가 내용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 이는 사람 한명 한명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 포스코는 이전부터 안전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선언하고, 안전 설비에 1조원 이상을 투자했

음에도 최근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절감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해 특단의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찾아보겠다

→ 회장으로서는 안전 경영을 실천할 때까지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

→ 안전 상황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안전 책임담당자를 사장급으로 격상해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는 경영을 실천하겠다

○ 대국민 사과라고 하면서 마치 대단한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기존에 내뉘었던 무책임한 대책에서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안전 책임담당자를 사장급으로 격상하겠다는 선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중심에 두는 경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IV.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고민

대부분의 기업이 안전을 위한 투자보다 노동자의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취급하고 이런 비용보다 노동자의 죽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욱 적기 때문이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윤의 절대 다수를 가져가는 실질적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가지고 있는 권한의 크기만큼 기업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안전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 책임을 가진 공무원들 또한 기업살인에 대한 책임에 벗어나게 해서는 안된다.

거대양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깁데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후퇴시킬 때까지 주요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었다. 하지만 후퇴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재벌 대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었다. 법 제정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예외 조항을 없애고 우려되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 등의 제도를 정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처벌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하한선을 두어야 하며, 벌금의 경우 기업의 수익에 따르는 구간을 나누는 방식도 필요하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가 결국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전체적인 이윤에도 영향을 끼치는 정도의 법이 될 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선택할 것이다.

위에서 제안한 방식은 정의당이 내놓았던 중대재해처벌법, 국민 10만명이 동의해 국회로 보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잘 담겨져 있다. 단 한명의 생명도 기업의 탐욕에 죽어나가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지금부터 하나둘 준비해야 한다.

### 현안사항 질의에 대한 회신

<'19.3.4,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우리지청은 '19.2.2(토) 포항제철소 제품부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감독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어 징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다만, 본 사건에 대한 수사의 최종 마무리 결과 감독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응당 조치하겠음. 아울러 향후 중대재해 발생시 관련법과 지침 등에 의거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 위 사망사고 관련 증거자료(CCTV 등) 및 우리지청 조사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사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함
- 위 사망사고 현장조사 과정에 유족과 노동조합이 이미 참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산재사고 발생시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즉시 그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초기 현장 조사에 노동조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회사측이 공동 참여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 위 사망사고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제철소는 특별감독 실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종합진단명령은 포항제철소가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에 해당될 경우 실시토록 조치 할 계획임
- 포항제철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음

# 직영 직원 사망 (속보)

19.2.2  
 (토) 안전방재그룹

1. 일시 : 2019. 2. 2(토), 17:43경
2. 장소 : 제품부두 12번 선석 하역기 Grab 상부 (지상 약 35m)
3. 사고자 인적사항

소속	성명	직무	입사일	비고
생산기술부 제품출하색선	김○○ (만 53세)	제품출하직	'86. 12. 26	병원이송 후 사망 판정

## 4. 발생상황 : 인턴직원 대상 직무교육 중 사망

- 사고자는 인턴직원 1명을 대상으로 12번 하역기에서 OJT교육(14:00~)을 실시하던 중 기계설 점검을 목적으로 인턴사원을 운전실에 남겨둔 채 출타한 후 연락이 두절됨.
- 인턴직원은 운전실에서 한동안 기다리다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시도(3회)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현장으로 나가 확인하던 중 쓰러진 사고자를 발견함(17:41).

## 5. 사고경과

- 14:00 ~ 16:00 사고자는 하역기에서 인턴사원에게 운전교육 실시
- 16:00 설비점검을 위해 하역기 가동 중지
- 16:30 인턴사원을 운전실에 대기시키고 사고자 단독으로 점검 실시
- 16:34 ~ 17:35 인턴사원이 사고자에게 3회 전화 시도(통화 안됨)  
 \*16:34분 최초 전화 및 발신 취소. 이후 2회(16:56, 17:35) 통화 시도
- 17:41 사고자 발견 및 심폐소생 (인턴직원, 심폐소생술 알고 있었음)
- 17:42 인근 13호기 운전자인 정OO 과장에게 사내 119 신고 요청
- 17:43 정OO 과장 119 신고
- 17:46 사내 119요원 현장 도착 (서영민, 김제준 등 6명)
- 17:46 ~ 18:06 현장 심폐소생 및 제세동기 실시
- 18:06 ~ 18:48 1층으로 이송(약 35m)하며 각 계단참마다 심폐소생(12회) 실시
- 18:48 ~ 19:05 사외 119 현장 도착 및 심폐소생 실시
- 19:05 ~ 19:17 환자 이송(사외 119구급차, 세명기독병원)
- 19:17 사망 판정(세명기독병원 의사)
- 20:40 ~ 21:10 과학수사대(2명) 사체 검안(세명기독병원)
- 21:30 ~ 22:10 과학수사대(2명) 현장 조사(하역기)  
 \*사체의 명치 하단부에서 확인된 놀림자국 원인 조사차 현장 방문  
 → 들것의 고정벨트에 의한 자국으로 확인하고 감
- 21:20 ~ 22:30 포항지청감독관(최대진) 현장 조사  
 \*현장 확인 결과 산업재해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함.

## 6. 향후계획

- 사인 판정 결과(경찰조사결과, 부검 등)에 따라 유가족과 협의 등 추후 대응 예정. 끝.



조영봉 (포항)  
 안전방재그룹/그  
 룹장

T. 054-220-0270  
 F. 054-220-6801  
 M. 010-6413-2680  
 E.

[ybcho@posco.com](mailto:ybcho@posco.com)

## 포항所 굿드라이버 활동 강화 추진 (시행일 : '21.1.6)

포항)안전방재그룹

所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제철소 출입 전차량 대상 굿드라이버 운동 전개

### I. 굿드라이버 준수 항목 (8개)

- ① 제한속도 준수 ② 주간 전조등 켜기 ③ 횡단보도 자전거 내려걸기
- ④ 철도 건널목 일단정지 ⑤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⑥ STOP 표지판 앞에서 일단정지
- ⑦ 깜박이 켜기 ⑧ 보행 및 운전시 휴대폰 사용금지

### II. 과속 및 일단정지 위반 차량 집중 단속 (안전방재그룹 4명)

※ 교통규칙 위반시 조치기준 (제철소 출입 순차량)

구분	1회	2회	3회
과속 20km/h 이상, 건널목 일단정지 위반, 난폭운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출입정지 10일	출입정지 20일	출입정지 30일
과속 10~20km/h,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적재물 안전조치 불이행 등	현장지도, 경고	출입정지 10일	출입정지 20일
과속 10km/h 미만, 전조등/방향지시등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교차로 일단정지 미준수 등	현장지도, 경고	주의메일 발송	출입정지 10일

### III. 출·퇴근 시간 교통안전 Patrol 지속 실시 (안전방재그룹 4명)

문의처 : 포)안전방재그룹 허승수과장(220-7504)

송등만입니다.

포항제철소내 이륜차 운행금지 시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 이륜차 정의: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 킥 보드 등

마래 사항 참조하시고 담당님을 추가로 조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항所 內 이륜차 운행금지 시행 안내

포항제철소 교통안전을 위하여 이륜차 운행을 금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시행준비 기간 : ~ 2. 21(일) 까지
- 운행금지 : 2. 22(월) 부터 ~

포항所 內 이동방안에 대하여 소속회사를 통하여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 첨부 ] 행정섭외그룹\_통근버스 운행노선(사내게시)

posco

장기현 (포항)안전방재그룹 안전시설섹션/과장

"부지런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 포스코 포항제철 협착사고 동향보고

### □ 사고개요

- '21.2.8.(월) 9:38분경 포스코 연료부두 내에서 (주)장원 소속 재해자 (男, 35세)가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 컨베이어에 철광석을 붓는 언로더가 갑자기 작동, 언로더와 롤러 사이에 협착·사망

### □ 조치현황

- 포스코 측의 유선보고(10:45분경)로 사고 인지 → 사고발생 작업(컨베이어 유지·보수) 및 유사작업(3개소)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명령(구두)
- 현재 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사고 원인 등 조사 중

### □ 향후계획

- 철저한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중조치 예정

### □ 현장사진



## < 별첨 자료 1.>

###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2018-2021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 - 2021.02.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미조직전략조직실

#### 1. 산재사망사고 세부내용

일자	내용	재해현황	노동부감독
<b>2018년</b>			
1/25(목)	포항 산소공장 #14플랜트 내 냉각탑 내장재 교체 중 질소가스 유입 질식	하청노동자 4명 사망	1/29-2/9 특별감독
6/30(토)	슬라브정정공장 2정정 2면 두 개의 Scale Box사이에 Grab를 걸쳐놓고 Scale 덩어리를 제거 중 Grab가 Close돼 머리 협착	하청노동자 1명 사망	
<b>2019년</b>			
2/2(일)	포항 신항만2부두 크레인 하역기 협착, 장기파열과 과다출혈 ※ 포스코 재해속보 심장마비로 발표, 산재은폐 시도	원청노동자 1명 사망	3/11-15 정기감독
6/1(월)	광양 포스넵 니켈추출 주변 용접작업 중 잔류가스 폭발, 추락	하청노동자 1명 사망	6/17-27 기획감독
7/2(목)	근무 후 부서회식 중 잠들 듯이 쓰러짐 ※ 전환배치 후 노동 강도 증가 및 잦은 회식 등 업무연관성으로 인한 과로사 제기	원청노동자 1명 돌연사	
7/11(토)	포항 3코크스 원료보관시설의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컨베이어벨트에 협착 후 4미터 추락	원청노동자 1명 사망	
12/30(월)	보행 중 포항 STS 4제강 철길건널목을 지나 PosMC 1문 방향으로 좌회전한 차량과 충돌, 사망(20.01.09)	하청노동자 1명 사망	
<b>2020년</b>			
7/13(월)	광양 3코크스 설비점검 중 8m추락	원청노동자 1명 사망	7/21-28 기획감독
7/30(목)	광양 3정비 지원센터 혁성실업 작업장에서 작업 중 심정지	하청노동자 1명 사망	
7월경	아르헨티나 염호 공장에 파견된 노동자 4천 미터 고산지대에서 근무하다 심정지	하청노동자 1명 사망	

10/14(수)	광양 2열연 수처리 콜링타워 작업 설명 및 TBM중 쓰러짐	하청노동자 1명 사망	
11/24(화)	광양 1고로 부대설비 산소 배관 정비 작업 중 폭발 및 화재	원청노동자 1명, 하청노동자 2명 사망	12/1~18 특별감독
12/9(수)	포항 소결공정 집진기 정비 작업 중, 원인 규명 중	하청노동자 1명 사망	12/16~31 감독
12/23(수)	포항 원료항만부두 옆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야간근무 출근 중 25t 덤프트럭과 충돌, 깔림	하청노동자 1명 사망	
<b>2021년</b>			
01/15(금)	광양 광양 원료부두 홀드 작업완료후 해치카바를 닫기위해 해치코밍 청소중 홀드 내부로 추락 사망	이주노동자 1명 사망	
02/08(월)	포항 연료부두내에서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중 협착사망	하청노동자 1명 사망	
<b>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1명 사망 (포스코 원청노동자 5명, 포스코 하청노동자 15명, 이주노동자 1명)</b>			

## 2. 설비사고, 산재사고, 중대재해 종합

	설비사고(인명피해 제외)	산재사고(사망사고제외)	사망사고	사망사고자
2018년	10건	21건	2건	5명 (하청 5명)
2019년	4건	58건	5건	5명 (하청 2명)
2020년	8건	35건	7건	9명 (하청 7명)
2021년	2건	-	2건	2명 (하청 1명, 이주 1명)
<b>누계</b>	<b>24</b>	<b>114건</b>	<b>16건</b>	<b>21명 (하청 14명, 이주 1명)</b>

※ 포스코의 산재 은폐로 정확히 집계되지 않기에, 확인된 것 이외에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함.

※ 하청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원청 사업장 (주)포스코 포항제철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20.02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공표 대상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			노동자 수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주)포스코 포항제철소	1.929	0	3.231	4	0	4	20,741	8,361	12,380 (237개소)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0.547	0	0.862	1	0	1	18,286	6,688	11,598 (167개소)

### 3. 일자별 세부내용

※ 포스코 내의 노동자들은 원청, 하청업체, 자회사, 하도급, 기타 등 수많은 고용형태로 구분되어 있음. 이로 인해 원청을 제외한 고용형태는 정확하게 확인 또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하청노동자로 통일했음. 취합된 사고는 모두 포스코 내에서 발생한 사고임.

※ 아래 내용은 여러 단위로부터 취합한 사고내역들임. 각 단위에서 파악한 사고내역이 각각 달랐던 것으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 취합되지 않고 은폐, 누락되어 있는 사고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됨.

번호	일자	사고내용	인적 재해
2018년			
1	01.25	포항 산소공장 질식사	하청노동자 4명 사망
2	02.21	포항 2연주공장 화상	하청노동자 1명 부상
3	02.23	포항 2선재공장, 골절	원청노동자
4	04.18	포항 원료공장 2원료 L-YARD 설비 간 충돌 피하다 쇠파이프 골절	원청노동자 1명 부상
5	04.28	포항 STS1냉연공장 불용수처리 설비화재	
6	06.11	포항 레스코 자선분광 공장 미끄러짐 무릎인대파열	하청노동자 1명 부상
7	06.30	광양 슬라브정정공장 2정정 두부협착	하청노동자 1명 사망
8	07.12	포항 2제강공장 OG집진수 오픈스루 고열작업 탈진	하청노동자 1명 부상
9	07.19	포항 중앙발전 #8보일러 암모니아 용기 폭발, 견갑골 타박상	하청노동자 1명 부상
10	07.23	포항 2제강 슬래그 야드 냉각장 B야드 지붕변형, 유리파손	
11	08.01	포항 2후판공장 DSS 전단운전실 하부 지하구 화재	
12	08.07	포항 소결공장 1소결측 화재, 밸트컨베이어 10cm절단	
13	08.13	포항 에스엠 사무실 계단, 골절	하청노동자
14	08.28	포항 에너지부 동력섹션 COG 배관 화재	
15	09.12	포항 PNP시편 제작장 손 협착	하청노동자 1명 부상
16	09.14	광양 3열연공장 #1가열로 측면 D-Table 추락, 골절	하청노동자 1명 부상
17	09.27	포항 4고로 로저부 가스흡입	하청노동자 1명 부상
18	09.27	포항 3연주공장 수처리 펌프룸 추락, 열상	하청노동자 1명 부상
19	10.03	포항 STS2제강 전기로 자재창고 화재	
20	10.09	광양 2제선공장 4고로 #2 출선구 안면부 충돌	원청노동자 1명 부상
21	10.12	포항 2열연공장 #1가열로 화재	
22	10.16	포항 STS 3제강 전기로 Gantry 화재	
23	10.21	포항 원료공장 A-502 B.C Head Chute부, 우측정강이 찰과상	하청노동자
24	10.27	포항 STS 소둔산세공장 DeNOx 설비 화재	
25	10.28	포항 STS 1냉연공장 CRM 롤베어링 화재	
26	10.29	광양 1제강공장 용선준비동 2PIT 추락, 골절	하청노동자 1명 부상
27	11.12	포항 3선재 공장 조압연 #12 Stand 손 협착, 절단	하청노동자 1명 부상
28	11.25	포항 1열연공장 권취 2호기 사이드가드 손 협착, 골절	하청노동자 1명 부상
29	12.01	포항 본사 입야, 골절	하청노동자(일용직)
30	12.11	광양 연수수리공장 내 Mold수리작업장 안면부 충돌, 골절	하청노동자 1명 부상
31	12.11	포항 STS 2냉연 TRM #2-1 압축컨베이어 흥부 입착	원청노동자 1명 부상
32	12.12	포항 1코크스공장 1선탄 J,K야드 입구 선탄작업장 손 절단	원청노동자 1명 부상

33	12.28	포항 FINEX 성형탄 공장 메인 타워 건물 주변, 골절	원청노동자
2019년			
1	01.21	포항 1원료 B-220 리턴롤러 추락, 두부강타	하청노동자 1명 부상
2	01.27	포항 3선제 coil 정정, 골절	원청노동자
3	02.02	포항 생산기술부 하역기 협착, 취장파열 및 과다출혈	원청노동자 1명 사망
4	02.18	포항 3제강 전로 슬레그 아드, 골절	하청노동자
5	03.02	광양 1코크스 장입구 화염분출, 화상	원청노동자 1명 부상
6	03.04	포항 3후판 리볼팅작업 손 찰과상	하청노동자 1명 부상
7	03.05	포항 1열연 열교환기 용접 화상	하청노동자 1명 부상
8	03.06	포항 FINEX 성형탄공장 사무실 계단 발을 헛디더 염좌	원청노동자 1명 부상
9	03.07	포항 3코크스 지게차를 피하다가 포크에 부딪혀 이마열상	원청노동자 1명 부상
10	03.09	포항 1제강 빌렛 몰드 커버 상부, 화상	하청노동자
11	03.20	포항 1코크스공장 1기 노상 21번 탄화실 장입구, 허벅지 화상	원청노동자
12	03.28	포항 2제강 3전로, 찰과상	하청노동자
13	03.31	포항 2후판 살수호스 정리, 작업발판 모서리 상반신 강타, 골절	원청노동자 1명 부상
14	04.08	포항 2제강 개구부 커버링용 보조발판 조립 중 추락, 손목골절	원청노동자 1명 부상
15	04.11	광양 3제강 경동대하부로 4m추락, 하반신 골절	하청노동자 1명 부상
16	04.18	포항 2연주 머신스카퍼, 골절	하청노동자
17	04.23	포항 1제선 2고로 주상 대탕도 커버, 찰과상	하청노동자
18	04.29	포항 2전기강판 스크랩 박스, 창상	원청노동자
19	05.02	포항 스테인리스 3제강 전기로 전극봉 준비 스탠드, 좌상	하청노동자
20	05.12	포항 #3FOG 카고크레인 작업 손 협착	하청노동자 1명 부상
21	05.16	포항 STS 압연 시면 표면 브러쉬로 제거 중 손 창상	원청노동자 1명 부상
22	05.19	포항 STS 압연 소둔산세 용접 시편 굽힘 테스트 작업대, 창상	원청노동자
23	05.21	포항 2파이넥스 손 골절	하청노동자 1명 부상
24	05.24	광양 2제선공장 3고로 전도로 허리뼈 미세골절	원청노동자 1명 부상
25	05.28	광양 2열연공자 3기열로 충돌, 대퇴부 골절	하청노동자 1명 부상
26	06.01	광양 포스넵 니켈추출 주변 용접작업 잔류가스 폭발	하청 1명 사망, 원청 1명 부상
27	06.05	포항 1선재 볼트고정 중 손가락 협착	하청노동자 1명 부상
28	06.13	포항 2제강 3용선 크레인 상부, 골절	원청노동자
29	06.17	포항 STS 3연주 레일고정 볼트 밟아 발가락 골절	원청노동자 1명 부상
30	06.18	포항 1열연 크레인 상부 에어컨 교체작업, 좌상	하청노동자 1명 부상
31	06.18	포항 2문 앞 탱크로리 2만리터 누출	
32	06.26	포항 3제강 턴디쉬 예열화구에 실족, 발과 종아리 화상	원청노동자 1명 부상
33	06.26	자전거 이용 중 빗물 미끄러져 승강계단 지지빔과 충돌, 열상	원청노동자 1명 부상
34	07.01	광양 전체 정전사고로 블리더 가스배출	
35	07.02	근무 후 부서회식 중 돌연사	원청노동자 1명 사망
36	07.06	포항 2파이넥스 정전 블리더 4개 개방, 6분간 검은 연기 배출	
37	07.09	광양 활물질 GNCF2라인 공기이송 하부, 왼쪽 손목 절단	하청노동자
38	07.11	포항 화성부 3코크스 컨베이어벨트에 협착, 4미터 추락	원청노동자 1명 사망
39	07.11	포항 2제강 1용강크레인 상부, 찰과상	원청노동자

40	07.14	포항 4고로 3코크스 8미터 추락, 하반신골절	하청노동자 1명 부상
41	07.15	포항 3코크스, 팔목과 우측 골반 복합 골절	하청노동자
42	07.16	포항 2제선 4고로 2주상 4출선구, 창상	원청노동자
43	07.17	포항 2파이넥스 성형탄공장 5미터 추락, 하반신마비	하청노동자 1명 부상
44	07.17	멕시코 MPPC 1공장(Puebla) 제품(스켈프) 야드, 오른손 검지 열창	하청노동자
45	07.22	포항 1제강 빌렛	원청노동자
46	07.25	포항 1제강 1전로 노전 더스트 청소, 찰과상	하청노동자
47	08.07	포항 생산기술부 구내운송 CTS, 손등뼈 실금	원청노동자
48	08.13	천안 포스코인터내셔널 TMC 시업부 원자재 보관구역, 손등 힘줄 2개 파손	하청노동자
49	08.15	경기도 안산 포스코인터 STS 냉연공장 SP, Pay Off FEEL, 약지골절 및 안대손상	하청노동자
50	08.18	포항 2전기강판-CRM TR1 Belt Wrapper 하부, 찰과상	원청노동자
51	09.03	중국 CTPC 서구 1공장 Side Scrap 취출공정 구역, 발목아킬레스건 파열	하청노동자
52	09.14	광양 원료공장 B223 Belt Tower (주건우 추락, 우측 대퇴부 골절	하청노동자
53	09.15	포항 2선재-압연-SHEAR #5 압연기	하청노동자
54	09.22	포항 2 FINEX-기타 성형탄 제조 Tower 1층 출입 Door, 골절	원청노동자
55	10.14	포항 2전기강판-2APL 천장크레인 Cable Tray, 늑골골절, 폐손상	하청노동자
56	10.23	포항 4발전-#10 BOILER 1층 계단, 좌상	원청노동자
57	11.04	포항 1후판-전단-RST 하부 Knife Move측, 골절	원청노동자
58	11.07	중국 냉연공장 3CAPL NG FILTER STATION, 왼쪽 인면 및 양팔부위 2도화상	하청노동자
59	11.09	포항 2 FINEX-HCI-본체 및 부속설비 Tower 13상, 골절	하청노동자
60	11.14	포항 3제강 정련로 스키머패드 교환 작업 열화상	원청노동자 1명 부상
61	11.25	포항 3후판-압연-압연 FM Side Shift Table 하부	하청노동자
62	12.02	인도네시아 코크스공장 Coke Oven상부 상승관, 인면부 부분 2도 화상	하청노동자
63	12.13	광양 2냉연 음용수 오염 사고	
64	12.19	포항 12호 발전 터빈룸 2층 고압급수기열기	하청노동자
65	12.21	포항 2후판 D2크레인 화재, 가스누출	하청노동자 10명 부상
66	12.24	광양 3제강 폐열발전기 시험 중 폭발, 중경상	하청노동자 6명 부상
67	12.30	보행 중 포항 STS 4제강 철길건널목을 지나 PosMC 1문 방향으로 좌회전한 차량과 충돌, 사망(20.01.09)	하청노동자(20.01.09 사망)
2020년			
1	01.10	포항 포스코휴먼스 오수처리장 배기팬, 왼손 검지 손톱 전단 골절	하청노동자
2	01.30	포항 2화성공장 토양정화설비, 골절	하청노동자
3	02.02	포항 2제강-기타 목욕탕 입구, 골절	원청노동자
4	02.21	포항 4연주-Slab주조 연주기 Mold 상부, 화상	원청노동자
5	03.01	포항 2제강-연주정정 Tundish 조립장, 골절	하청노동자
6	03.03	포항 1제선-1고로-원료 집진기, 골절	원청노동자
7	03.09	포항 STS4제강 연주 TCM 후단 자재 운반통로, 충돌, 앞니 손상	원청노동자
8	03.11	포항 1FINEX 유동로 철거공사장	하청노동자
9	03.13	포항 품질기술 조직시험 Micro Cutter 작업장, 자상	원청노동자
10	03.20	포항 2열연 1가열로 예열대 하부 Near Side측 안전밸브	하청노동자
11	04.20	포항 STS-압연-1냉연-TLL 출측 공시재 시편보관대, 창상	원청노동자

12	04.26	중국 공장동 A구역, 스킵프 자동포장기 옆, 우측 발목 골절	하청노동자
13	04.27	포항 품질기술 후판가공실 인장시험 가공기(더블헤드밀링), 골절	하청노동자
14	05.12	광양 MFC공정 빔이 타격	하청노동자 1명 부상
15	05.12	광양 MFC공정 6m에서 떨어진 코너앵글(1.2m)이 타격	하청노동자 1명 부상
16	06.13	포항2열연 소둔산세 대형 화재	
17	06.16	포항 토페토카 오작동, 붉은 연기 치솟고 쇳물 유출	
18	06.07	STS3연주 그라인딩 머신 주행 레일 옆, 발가락 골절	원청노동자
19	06.18	포항 STS 냉연 시편보관실, 자상	원청노동자
20	06.19	포항 SRF사업소 연료동 철금속 집하장 셔터 하부, 요추1,2번 골절	하청노동자
21	06.26	포항2열연 소둔산세 화재사고 복구 작업 중 가슴 부상	하청노동자 1명 부상
22	07.07	포항 제강공장 화재	
23	07.08	포항 #2 Gas Mix Station 보강작업 후 4-5m 추락	하청노동자 1명 부상
24	07.09	광양 활물질	
25	07.13	광양3코크스 코크스5호기 설비점검 중 8m추락	원청노동자 1명 사망
26	07.26	광양 MFC 시스템 비계 설치 작업 중 두부 타격	하청노동자 1명 부상
27	07.29	광양 4냉연 PCM상부 가동 중인 오토 크레인과 충돌	하청노동자 1명 부상
28	07.30	광양 경상기지부근 혁성실업 아적장 심정지	하청노동자 1명 사망
29	07.30	광양 2연주 슬라브정정 앞 104번도로 출근 중 승용차와 충돌	하청노동자 1명 부상
30	07월	아르헨티나 염호공장 4000미터 고산지대 근무, 심정지	하청노동자 1명 사망
31	08.03	포항 중앙스크랩 덤프트럭 바퀴에 다리 압착, 무릎 7cm절단	하청노동자 1명 부상
32	08.03	광양 2고로 열풍로 질소배관 폭발, 안면부 찰과상	하청노동자 1명 부상
33	08.24	포항 4고로 형산발전소 연구관련 컨테이너 화재	
34	09.03	포항 2열연 전기실 11문 태풍피해상황 확인 중 두부강타, 손상	원청노동자 1명 부상
35	09.18	포항 1열연 권취 전기실 에어컨 정비 중 손 협착, 골절	원청노동자 1명 부상
36	09.21	포항 FINEX-3 FINEX-기타 정비실 내 자재창고, 골절	원청노동자
37	09.22	포항 항만 하역기 운전실과 선박 선체 일부 충돌, 부상은 없음, 재해자 정직 1개월(210221 현재 중노위 올라가 있음)	
38	10.12	포항 A주상 출선구 측면 지붕 제거 작업 중 용융물 비산, 화상	원청노동자 1명 부상
39	10.14	광양 2열연 수처리 쿨링타워 작업 중 심정지	하청노동자 1명 사망
40	10.22	포항 1선재압연 B-Line #15 Shear 전면야드 화상	원청노동자 1명 부상
41	10.29	포항 (주)장원 진공 용해장 용해시료 절단기, 왼손 검지 골절	하청노동자
42	11.11	아르헨티나 염호 2관정 바닥 유출 연료제거 중 손가락 절단	원청노동자 1명 부상
43	11.13	포스코아산TST TLL, Scrap Baller 용접보수작업 후 손 끼임	원청노동자 1명 부상
44	11.24	광양 1고로 부대설비인 산소 배관 폭발, 화재	원청 1명, 하청 2명 사망
45	12.09	광양 3냉연 제품크레인1동1호기(무인크레인)의 판넬실 화재	
46	12.09	포항 소결공정 집진기 정비작업, 설비에 빨려 들어가	하청노동자 1명 사망
47	12.09	포항 항만 연속식 하역시(CSU) #2호 Gantry Belt Conveyor부, 창상	하청노동자
48	12.17	포항 소둔산세공 4CGL 화재, 각 Grinder 마다 화재감지기 경보가 작동하지만, 화재 발생 시 감지기 작동 불능	
49	12/23	포항 2전강 3ACL FURNACE 폐가스 덕트 폭발	
50	12/23	포항 원료항만부두 옆 도로에서 야간근무 출근 중 25t 덤프트럭	하청노동자 1명 사망

		과 충돌, 깔림	
2021년			
1	01/15	광양 원료부두 홀드 작업완료후 해치카바를 닫기위해 해치코밍 청소중 홀드 내부로 추락 사망	이주노동자 1명 사망
2	02/01	포항 10번, 11번 원료부두 2번 하역기와 9번 하역기 충돌사고, 감지센서 고장으로 운전자 하역기 근접 사실 미인지, 사고로 철기둥 수리 10여일 소요, 하역기 운전 노동자 2명 충돌에 추락 모면했지만 불안중세 심함, 포지티브회에서 공문으로 회사에 재발방지와 안전조치 요구했으나 무응답, 노동부도 인명피해 없었다고 무반응	
3	02/05	포항 코크스 공장 Mix gas누출로 인한 CO2흡입 사고	원청 2명, 하청 2명
4	02/08	포항 연료부두내에서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중 협착사망	하청노동자 1명 사망

#### 4. 10년간 연도별 산업재해 신청·승인여부·유형분포 현황

※ 자료 출처 : 일과 건강(2020.12)

○ 10년간 연도별 산업재해(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 신청현황

구분	사고	질병	출퇴근	계
2010	25	7	0	32
2011	26	5	0	31
2012	17	2	0	19
2013	19	3	0	22
2014	16	2	0	18
2015	20	6	0	26
2016	17	1	0	18
2017	12	3	0	15
2018	7	10	2	19
2019	16	4	3	23
<b>계</b>	<b>175</b>	<b>43</b>	<b>5</b>	<b>223</b>

○ 10년간 연도별 산업재해 승인/불승인 현황

구분	승인	불승인	일부승인	계	승인율
2010	27	5	0	32	84.4%
2011	25	5	1	31	80.6%
2012	15	4	0	19	78.9%
2013	18	4	0	22	81.8%
2014	15	3	0	18	83.3%
2015	21	5	0	26	80.8%
2016	17	1	0	18	94.4%
2017	11	2	2	15	73.3%
2018	15	3	1	19	78.9%
2019	20	3	0	23	87.0%
<b>계</b>	<b>184</b>	<b>35</b>	<b>4</b>	<b>223</b>	<b>82.5%</b>

○ 산재승인 사고/질병 유형 분포(2010~2019년)



구분	승인	불승인	일부승인	계	승인율
사고	164	10	1	175	93.7%
질병	15	25	3	43	34.9%
출퇴근	5	0	0	5	100.0%
<b>계</b>	<b>184</b>	<b>35</b>	<b>4</b>	<b>223</b>	<b>82.5%</b>

○ 업무상질병 유형 분포(2010~2019년)

구분	승인	불승인	일부승인	승인율	합계
뇌/심혈관계 질환	8	15	0	34.9%	23
시력이상	0	1	0	0%	1
청력이상	4	5	0	44.4%	9
<b>악성종피종</b>	<b>2</b>	<b>0</b>	<b>0</b>	<b>100%</b>	<b>2</b>
<b>혈액암</b>	<b>1</b>	<b>0</b>	<b>0</b>	<b>100%</b>	<b>1</b>
<b>백혈병</b>	<b>0</b>	<b>1</b>	<b>0</b>	<b>0%</b>	<b>1</b>
정신질환	0	1	0	0%	1
근골격계 질환	0	0	3	0%	3
미분류	0	2	0	0%	2
<b>합계</b>	<b>15</b>	<b>25</b>	<b>3</b>	<b>34.9%</b>	<b>43</b>

## 5. 포스코 사내하청 산재은폐 제보현황

○ (주) 롤앤롤 공상 처리 현황(2020. 07.13 기준)

구분	사고일자	사고내용	재해부위	조치	재해자
1	2009.06.27	작업중 베임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비공식 공상 처리	하**
2	2010.02.10	작업중 격돌	머리, 목 타박	비공식 공상 처리	권**
3	2016.01.03	추락	경추 수술	항소심 계류 중	이**
4	2016.3월	작업 중 협착	골절	비공식 공상 처리(휴직 후 전출)	신@@
5	2019.08.02	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		비공식 공상 처리	김**
6	2019.10월	작업 중 허리 삐끗	허리 디스크 파열	비공식 공상 처리(잔업시간 부여)	정**
7	2019.12.28	롤교체 작업 중 허리 부상	허리	비공식 공상 처리	신**
8	2019.12월	갈비뼈 골절	흉부 갈비뼈	비공식 공상 처리	손**
9	2020.05.14	작업 중 협착	발등 3부위 골절	비공식 공상 처리	하**
10	2020.5월	작업 중 허리 삐끗	허리 디스크 파열	비공식 공상 처리	송**

○ (주) 롤앤롤 재해 현황(2020. 07.13 기준)

구분	사고일자	사고내용	재해부위	조치	재해자
1	2012.06.12	작업 중 물에 감김	왼팔 열창 골절	산재 신청	정**
2	2018.11.12	압연기 협착	오른팔 복합 골절(절단)	산재 신청	이**
3	2019.09.15	작업 중 복부 타박	흉부 기흉	산재 신청	박**

-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주)롤앤롤 현장의 산재은폐 사례를 1차로 조사함. 현재까지 10건의 산재은

폐 사례가 취합됨. 갈비뼈 골절, 협착, 베임, 퇴근 중 사고 등 재해유형도 다양하며 산재은폐 사례 문의와 제보가 이어지는 중임. 이는 (주) 롤앤롤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전반에 걸쳐 고착되어 있는 문제임.

- 끊이지 않는 산재은폐 제보, 책임자 처벌과 전수조사 실시 촉구함.
- 포스코 하청업체 산재은폐 사건, 고용노동부의 전면조사를 촉구함.

## 6.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재해 일자	감독일자	감독대상	감독결과
18.01.25(목)	18.01.29(월) ~02.09(금) 특별감독	포항제철 내 38개 공장과 56개 협력사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재 조치</li> <li>- 사법처리 414건(하청 13개소 38건)</li> <li>- 과태료 부과 146건 529,350천원(하청 36개소, 87건, 147,900천원)</li> <li>- 작업중지 10개소, 사용중지 25대, 시정지시 725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위반 사항</li> <li>① 안전보건시스템과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취약, 안전보건조직이 사업부서에 편재되어 독립성·책임성 취약, 신규공사 발주부서 및 기존 시설·설비 담당 부서와 안전보건담당 부서 간 업무연계체계 부실, 현장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시스템에 문제</li> <li>②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부실 작성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미게시 일부</li> <li>③ 안전난간 설치상태 불량, 전기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등 추락·감전·협착과 같은 재래형 재해와 관련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대책 및 지도사항</li> <li>-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 안전보건조직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포항제철소장) 직속으로 개편, 대대적인 안전보건전문가 보강을 통해 전문성 제고와 원청·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강화</li> <li>- 사업장 내 시설물의 설치·정비·보수 주관부서, 협력업체 및 안전보건담당 부서가 계획단계부터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작업토록 지도</li> <li>- 안전관리시스템 실태 및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li> <li>- (주)포스코에서 마련 중인 안전보건관리종합대책에 특별감독 결과를 포함</li> </ul>
	노동자참여		
19.02.02(토)	19.03.11(월) ~03.1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제재 조치</li> <li>- 법 위반사항 74건(원청56,하청18), 사법조치(원청34, 하청5)</li> </ul>

	정기감독		- 과태료 37건 137,250천원, 시정명령 67건(원청51, 하청16)
	노동자참여		○ 원청 주요 위반 사항
	2/7 관계기간 합동 현장조사 지회 참여		- (사법조치) 안전난간 및 통로 미설치, 접지 미실시, 소화설비 임의조작 금지표시 미게시 등 - (과태료) 산업재해 지연보고, 경고표지 미게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 협력업체 주요 위반 사항
			- (사법조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과상승방지장치 손상 등 - (과태료)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등
19.06.01(월)	19.06.17(월)~19.06.27(목) 정기기획감독	※ 광양제철소 전반에 대한 감독 - 제철소 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여부, 작업 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 - 18.01 질식사, 19.02 협착사 발생한 포항소 유사공정 및 위험유무	○ 주요 제재 조치 - 법 위반사항 455건, 사법처리 221건 - 과태료 167건 121,000천원, 시정지시 67건
	노동자참여		○ 주요 위반 사항
	원·하청 지회 3인 참여		① 중대재해가 발생한 PosNEP공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지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지연, 작업환경측정 누락, 특수검진 지연 등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관리상태가 불량 ② 기초적인 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 부적정, 방폭지역 방폭 기능 불량, 전기 충전부 노출 및 미접지, 기계, 기구 회전부 방호상태 불량, 밀폐 공간 관리누락 등이 확인 ③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작성, 경고표시 누락, 공정안전관리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위반, 교육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유해위험물질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
			○ 주요 대책 및 지도사항 - PosNEP 포함 본사 직영의 신소재사업 작업장 전체에 대해 ‘안전·보건 종합진단’ 실시 - 광양제철소 소재 36개 전 공장에 대하여는 현장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
20.07.13(월)	20.07.21(화)~07.28(화) 기획감독	광양제철소 3코코스 공장 중대재해 개소의 사망재해자 1인 작업 경위, 발판 등 안전장치 결함 여부 등	<b>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의 자료 비공개</b>
	노동자참여		
	배제		
20.11.24(화)	20.12.01(화)~12/18(금) 특별감독		12/23 특별근로감독 후 강평예정

	<b>노동자참여</b>		
	원·하청 지회 3인 참여 (김재이, 김지현, 김용민)		
20.12.09(수)	20.12.16(수)~12.31(목) 정기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20.12.17.~ '21.1.11.(3주간) (20년 연말까지에서 연장됨)</li> <li>※ 감독기간 중인 ' 21.1.7.~1.8.(2일간) 도로교통공단과 포항제철소 내 도로 점검(향후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서 접수시 포항제철소에 대해 행정지도 예정)</li> <li>○ 투입인원: 총 33명</li> <li>○ 지적사항(총 331건): 입건대상 220건, 과태료 111건(307백만원)</li> </ul> <p>1월11일 포항지청, 포스코 참여하는 강평진행(포스코 안전센터)</p> <p>1월15일 포항지청, 금속노조 포항지부 참여하는 강평진행(산재예방과)</p>
	<b>노동자참여</b>		
	원·하청 지회 총 8명, 매일 2명씩 참여(박종우, 김도한, 송호승, 구교훈, 장현희, 원형일, 김준표, 이상록)		

## 7. 포스코 주요 제재 조치 현황

※ 자료출처 : 20.11.19 포스코 기업공시 분기보고서(2020.09)

- 2018년~2020년 포스코 주요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18.7.5	포스코, 공장장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미준수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제1호 및 제6호)	유죄판결 확정 (300만원 벌금)	현장 점검 지적 즉시 공장가동 중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관리지침에 대한 보완 실시, 적법관리
18.8.14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산소공장 중대재해 관련 포항제철소 특별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등)	3억516만원 과태료 납부	안전관리부서 강화, 개편하고 안전조치 실시 대책 강구하여 관련법규 준수 노력하고 있음
18.9.3	포스코, 담당자(7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산소공장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유죄판결 확정 (6,800만원의 벌금)	안전관리부서 강화, 개편하고 안전조치 실시 대책 강구하여 관련법규 준수 노력하고 있음
18.10.15	포항제철소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산소공장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유죄판결 확정 (1,000만원의 벌금)	안전관리부서 강화, 개편하고 안전조치 실시 대책 강구하여 관련법규 준수 노력하고 있음
19.3.27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제품출하색선 중대재해 관련 정기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등)	8,608만원 과태료 납부	설비 보완하여 유사 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
19.4.4	포스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수재슬래그 운송 중 낙수 발생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호)	300만원 과태료 납부	감시시스템 강화로 재발방지 노력하고 있음
19.4.5	포스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용융슬래그 관련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제1의3호)	100만원 과태료 납부	수재슬래그시설 인허가신고 완료 후 신고하고 있어 재발가능성 없음
19.5.10	포스코, 담당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고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 2 제6항)	경고 처분	민관협의체 발족을 통한 협의 사항 이행 중
19.5.31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67조, 제68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유죄판결 확정 (500만원의 벌금)	안전관리부서 강화, 개편하고 안전조치 실시 대책 강구하여 관련법규 준수 노력하고 있음
19.7.1	포스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84조)	불복절차 진행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19.7.9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정기 및 기획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 및 제24조, 동법 제 72조)	9,496만원 과태료 납부	개선 조치 완료 후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보고, 유사 개소 일제 점검 및 보완 조치함
19.8.11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3코크스 중대재해 관련 정기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등)	3,348만원 과태료 납부	안전취약 개소 개선 및 비상안전활동 실시로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하고 있음
19.9.18	포스코, 공장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1, 6호)	유죄판결 확정 (벌금 300만원)	안전관리부서 강화, 개편하고 안전조치 실시 대책 강구하여 관련법규 준수 노력하고 있음
19.10.23	포스코	중양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	해고처분 징계양정 부당 판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불복절차 진행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19.11.25	포스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미이행 (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4조)	2,925만원 이행강제금 납부, 불복절차 진행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20.01.29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협력사 직원 중대재해 관련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유죄 판결 확정(500만원의 벌금)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
20.01.31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STS2냉연공장 사고 관련 산업재해 예방 위해 필요한 조치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71, 67, 68, 23조)	유죄판결 확정(200만원의 벌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관련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2.27	포스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명령	공정대표의무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불복절차 진행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20.3.26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3코크스 중대재해 관련 정기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등)	유죄판결 확정(200만원의 벌금)	개선 조치 완료 후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보고, 유사 개소 일제점검 및 보완 조치함
20.3.31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PNR-M 직원 고발사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일부 기소유예, 일부 혐의 없음	개선 조치 완료 후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보고, 유사 개소 일제점검 및 보완 조치함
20.4.21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이차전지소재 사업실장, 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포스넵 공장 협력사 직원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사업주로서 취해야 할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의무 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 67, 34, 29, 24, 23조)	유죄판결 확정(포스코 1000만원, 광양제철소장 500만원, 이차전지소재사업실장 500만원, 관리감독자 각 500만원의 벌금)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
20.5.12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	14년 해광기업 직원 재해 관련 정기감독 결과	1,848만원 과태료 납부	개선 조치 완료 후 고용노동부

		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등)		시정조치 보고, 유사 개소 일제 점검 및 보완 조치함
20.5.26	포스코, 공장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마그네슘판재공장 배출시설 운영시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환경보전법 제89, 31조)	유죄판결 확정(100만원의 벌금)	설비 교체 및 일상점검 강화와 작업자 교육실시로 관련법규 준수 노력
20.6.11	포스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해고 3명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등 구제명령에 대한 미이행 (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4조)	4,275만원 이행강제금 납부, 불복절차 진행	해당 사건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20.6.15	담당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명령	3코크스공장 협력사 직원 추락사고 관련(형법 제268조)	유죄판결 확정(100만원의 벌금)	개선 조치 완료 후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보고, 유사 개소 일제점검 및 보완 조치함
20.7.23	포스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3.1.29. 과징금 부과하였으나 동 과징금이 2019.7.8. 법원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	부당한 공동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744억6,900만원의 재산정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진행 중(과징금 납부)	독자적 아연할증료 테이블 운영
20.9.15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정기감독 MSDS 경고표지 부착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위반)	1,824만원 과태료 납부	개선조치 진행 중(완료 예정), 중대재해예방(정기감독 대상 제외)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준 준수 강화

## 8. 포스코 안전대책 발표 일시

일자	대책	주요 내용
2018.05.24	안전보건종합대책	<p>△ 중대재해 예방 위해 안전 관련 분야 향후 3년간 1조 1,050억 원 투자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전문가 200명 영입, 안전인력 지원, 별도 예산으로 외주 안전교육</li> <li>- 컨트롤타워 ‘안전전략사무국’ 신설, 제철소장 직속으로 ‘안전방재부’ 격상</li> <li>- 중대재해 위험시설 안전장치 보완</li> <li>- 포스코-외주사 안전협의체 구성</li> </ul>
2018.10.05	포스코 안전다짐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정우 “세이프티 워드 포스코”</li> <li>- 포스코, 협력사 임직원 600명 결집</li> </ul>
2019.07.24	안전혁신 비상 태스크포스(TF) 발족	<p>△ 포스코와 협력사 직원 합동 현장 점검 통한 안전 사각지대 사전 발굴 및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안전지킴이 제도 시행</li> <li>- 야간 교대시간 등 사고 취약 시간대 직책보임자와 현장 근로자 공동 안전점검 실시</li> <li>- 노후화된 핸드레일과 계단 등 안전시설물 전면 교체</li> <li>- 장기 미사용 시설물 및 설비 전수 조사 및 철거 예정</li> </ul> <p>2019년 1700억 원 규모 안전시설물 투자 2020년 내 완료예정</p>
2020.12.02	안전사고 재발방지 특별대책	<p>△ 향후 1년 동안을 비상 안전방재 예방기간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3년간 1조원 추가 투자해 위험·노후 설비 인프라 등 개선 (위험·노후 설비를 전수 조사해 설비위험도에 따른 다중 안전방호장치 설치, 위험 설비 수동밸브 자동화, 안전관리 CCTV 추가 설치 등)</li> <li>- 안전관리요원 기존 300명에서 600명으로 2배 증원 및 철강부문장(대표이사 사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 안전방재 개선단 운영 (가스취급 및 밀폐시설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타 공장 간에도 위험요소를 중복 점검해 리스크 발굴에 집중할 계획, 수시 현장 순찰을 통해 작업표준과 실제작업 차이를 점검해 개선 조치를 취하기로, 협력사 안전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안전 미준수에 대해서는 상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li> <li>- 협력사를 포함한 관계사 포함 전 임직원 안전역량 제고를 위한 안전기술대학 설립</li> </ul> <p>(직군·직책별 안전 인증제도, 직책보임자 대상 산업안전교육 심화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국내의 주요 안전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문 강사진도 구성키로 했다. 전 직원 교육과 함께 제철소 공정위험관리 전문가 300명도 육성해 사업장 공정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철강 공정 특성이 반영된 안전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제조업들 선진 안전관리기법을 연구해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p>
		→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분들이 요구하는 추가 내용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할



2021.02.16.	최정우 회장 대국민 사과	<p>수 있도록 하겠다</p> <p>→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 이는 사람 한명 한명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p> <p>→ 포스코는 이전부터 안전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선언하고, 안전 설비에 1조원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최근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절감하고 있다.</p> <p>→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해 특단의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찾아보겠다</p> <p>→ 회장으로서 안전 경영을 실천할 때까지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p> <p>→ 안전 상황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안전 책임담당자를 사장급으로 격상해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는 경영을 실천하겠다</p>
2021.02.18.	ESG위원회 신설(이사회에서 결정)	<p>3월12일 주주총회에서 ESG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등에 대한 경의 추진예정</p> <p>△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ESG위원회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과 안전·보건,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정책을 이사회에 부의해 최종 결정할 방침</li> <li>- 선임 사내·사외이사 후보 확정</li> </ul> <p>(경영지원본부장 후보-정창화, 철강부문장-김학동, 글로벌인프라부문장-전중선, 사내이사-정탁, 사외이사-유영숙,권태군)</p>

## 9. 포스코 산재보험료 연 감면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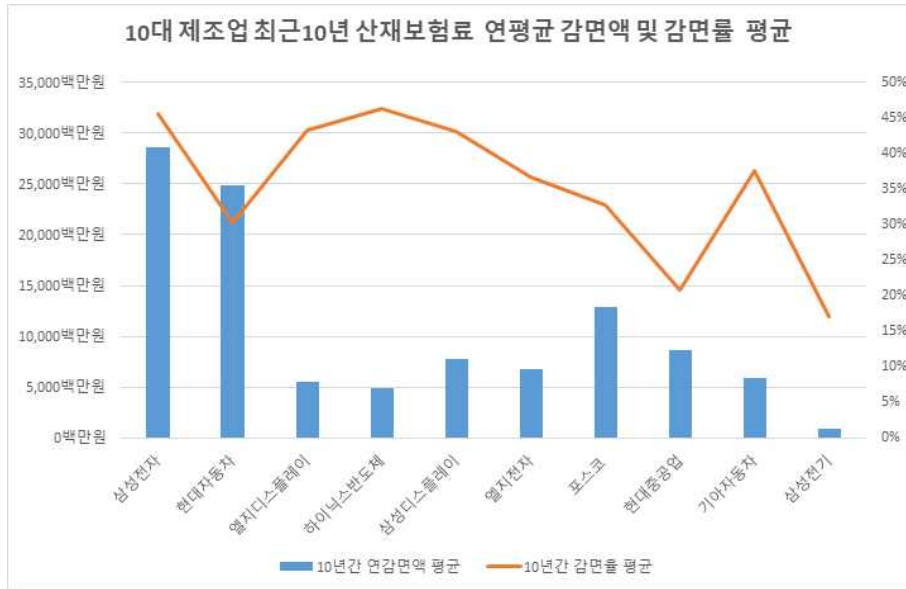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정의당 강은미의원실(2020.07)

△ 최근 10년 제조업의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율 1위는 하이닉스반도체로 연평균 46.3% 연평균 약 48억원 감면받았고, 2위는 삼성전자 평균 45.5%로 연평균 약 286억원 감면받았다. 3위 엘지디스플레이 43.3%, 4위 삼성디스플레이 42.5%, 5위 기아지동차 37.7%, 6위 엘지전자 36.6%, 7위 포스코 32.7%, 8위 현대자동차 30.3%, 9위 현대중공업 20.7%, 10위 삼성전기 17% 순으로 집계

△ 현행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은 하청과 파견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개별실적요율만 적용하여 산출하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하청, 파견 노동자들의 산재는 증가함에도 10대 대기업 원청 산재보험료는 감액받게 됨.

※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 근로자수 10인 이상(건설업 제외) 또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 차등 증감

○ 10대 제조업, 10년간 산재보험료 연감면액 평균 및 감면율 평균



기업명	10년간 감면율 평균	10년간 연감면액 평균 (단위:원)
삼성전자	45.5%	28,623,452,144
현대자동차	30.3%	24,815,139,191
엘지디스플레이	43.3%	5,537,843,586
하이닉스반도체	46.3%	4,846,772,477
삼성디스플레이	42.5%	5,888,079,145
엘지전자	36.6%	6,736,209,321
<b>포스코</b>	<b>32.7%</b>	<b>12,863,901,668</b>
현대중공업	20.7%	8,663,593,081
기아자동차	37.6%	5,935,860,290
삼성전기	17.0%	907,700,435

○ 10대 제조업, 10년간 산재보험료 연도별 감면액 (2010년~2019년)

(단위:백만원)

기업명	2019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삼성전자	13,586	36,768	33,469	35,690	35,427	32,473	33,660	28,700	19,067	17,393
현대자동차	11,842	31,709	28,560	28,904	28,814	27,133	24,275	27,438	22,221	17,254
엘지디스플레이	2,294	6,886	7,152	7,395	7,315	5,570	5,661	5,277	4,226	3,601
하이닉스반도체	3,068	6,269	6,048	7,160	6,991	5,102	4,425	4,165	2,765	2,475
삼성디스플레이	2,510	7,679	6,540	6,823	-	-	-	-	-	-
엘지전자	3,944	9,205	11,463	10,982	10,673	10,011	10,313	8,936	7,396	6,103
<b>포스코</b>	<b>2,570</b>	<b>6,077</b>	<b>6,021</b>	<b>6,234</b>	<b>6,043</b>	<b>5,605</b>	<b>5,263</b>	<b>5,934</b>	<b>4,757</b>	<b>4,166</b>
현대중공업	3,129	4,960	7,271	12,167	16,115	15,477	18,428	21,075	20,706	15,935
기아자동차	6,617	13,952	12,345	12,184	11,732	11,543	11,679	9,476	8,731	5,950
삼성전기	1,086	2,789	2,508	2,694	2,749	2,934	2,864	2,347	1,834	1,533

※ '삼성디스플레이'는 2016년부터 개별실적요율 적용

## 10. 포스코 직업성암 관련 산업재해 신청현황

※ 자료 출처 : 일과 건강(2020.12/2021.02)

### ○ 포항 포스코 직업성질환(암) 산업재해 1차 신청자 현황 (20.12..14)

성명	나이	진단일	병명	재해경위
김OO	만60세	2016	폐암	코크스 공정 35년 근무, 2017년 퇴직
정OO	만69세	2019	폐섬유증	코크스 공정 29년 근무, 2007년 퇴직
이OO	만64세	2017	폐암	냉연부 근무, 2017년 퇴직
이OO	만61세	2018	폐암	냉연부 42년 근무, 2019년 퇴직
우OO	만67세	2020	폐암	코크스 공정 30년 근무, 2010년 퇴직
박OO	만64세	2016	루게릭병	냉연부 스텐레스 근무, 2020년 사망
이OO	만68세	2016	루게릭병	냉연부 출하과 근무, 2004년 퇴직
천OO	만58세	2020	세포림프종	<b>*포스코 현장에서 근무한 건설플랜트노동자</b>

### ○ 포항 포스코 직업성질환(암) 산업재해 2차 신청자 현황 (21.02.02)

성명	나이	진단일	병명	재해경위
김OO	만61세	2012	폐암	포스코 하청업체 도장, 청소 작업 10년 근무
정OO	만77세	2019	폐섬유증	포스코 냉연부 전기강판 작업, 1999년 퇴직
안OO	만66세	2017	폐질환	포스코 하청업체 보온, 배관 작업 26년 근무
박OO	만76세	2016	루게릭병	포스코 정비 작업 25년 근무, 2000년 퇴직

### ○ 10년간 포스코 직업성암 산재신청 현황(총4건)

구분	2015년	2017년	2018년	총계
건수	1건	2건	1건	4건
승인여부	백혈병 불승인	악성중피종 승인 혈액암 승인	악성중피종 승인	승인 3건 불승인 1건

### ○ 제철소에서 발생 가능한 직업성암과 발암물질

발암물질	호발 부위	주요 노출과정	비고
• 결정형유리규산	폐암	• 석탄 및 코크스 취급과정 • 코크스로 및 고로 정비작업	
•코크스오븐배출물질 (COE) •다핵방향족탄화수소 (PAHs)	폐암, 혈액암, 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	• 화성공장 • 기타 제철화학 관련 공장들	• 단기간 발생 가능 • 제철 산단(특히 제철화학)

•콜타르피티			관련)으로 확대
• 석면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문석 취급공정</li> <li>• 화성, 제선, 제강, 압연 공정</li> <li>• 거의 모든 정비작업</li> </ul>	• 과거 노출 중심
• 6가크롬, 니켈, 비소	폐암, 비강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테인리스 공장</li> <li>• 기타 압연공정</li> <li>• 고로 관련 작업</li> </ul>	
• 전리방사선	갑상선암 등 각종 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계측 정비</li> </ul>	

## 11. 광양제철소 산재사망사고 관련 국제통합제조산업별노련 연대서한

# 글로벌 문제아 포스코, 세계가 보고 있다

## 인더스트리올 광양제철소 산재 사망자 추모와 금속노조 투쟁지지 서한 보내와 전 세계 노동자의 걱정거리가 된 포스코 산재 문제

전 세계 제조산업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인더스트리올(IndustriALL Global Union)이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금속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서한을 보냈다. 연이은 산재사고에 국제노동단체도 포스코의 노동조건을 주시하고 있다.

인더스트리올 서기장 발터 산체스(Valter Sanches) 명의의 연대서한은 우선 산재로 사망한 3명의 노동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먼저 전했다.

이어서 서한은 이번 광양제철소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금속노조의 노력에 대한 인더스트리올의 지지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인더스트리올은 ▲포스코가 유가족에게 공개 사과하고 보상할 것 ▲근로감독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철저한 원인 규명, 노사공동대응체계 구축, 근본 안전대책 마련 ▲위험의 외주화 중단 ▲산재와 직업병 은폐 시도 중단 ▲노후설비 개선대책 마련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인더스트리올은 노동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는 결의로 서한을 마무리했다.

연대서한은 3일(현지 기준 2일) 금속노조에 접수됐다. 인더스트리올은 터키 포스코 앓산 공장 등 해외에 진출한 포스코 사업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속노조도 인더스트리올을 통해 연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54 bis, route des Acacias  
CH 1227 Geneva  
Switzerland

Tel: +41 (0)22 308 50 50  
Fax: +41 (0)22 308 50 55  
info@industriall-union.org  
www.industriall-union.org

President: Jörg Hofmann  
General Secretary: Valter Sanches

Geneva 2<sup>nd</sup> December 2020

To Ho-gyu KIM  
President  
Korean Metal Workers' Union (KMWU)  
233, Bupyeong-daero, Bupyeong-gu, Incheon-City, Republic of Korea  
[hyewonchong@gmail.com](mailto:hyewonchong@gmail.com); [kmwusouthkorea@gmail.com](mailto:kmwusouthkorea@gmail.com); [inriver40@hanmail.net](mailto:inriver40@hanmail.net)

## IndustriALL Global Union in solidarity with workers at Posco Gwangyang Steelworks

Dear Brother Kim,

I am writing this letter to you as the General Secretary of [IndustriALL Global Union](http://www.industriall-union.org), which represents more than fifty million workers in mining, energy and manufacturing sectors throughout the world, to mourn the death of three workers at Posco Gwangyang Steelworks on 24 November and to express our heartfelt condolences to their families.

IndustriALL Global Union joins 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KMWU) to demand accountability from POSCO for the frequent, preventable industrial disasters, and to call for those responsible to be prosecuted. In addition, we fully support your call, demanding that POSCO:

- Apologize publicly to the bereaved families and take responsibility, including reparations to the families;
- Let the trade union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of this accident to find the root causes and work jointly between labour and management to build a response system, and lay down fundamental preventative safety measures;
- Stop outsourcing hazardous work;
- Stop concealing industrial accidents and occupational disease;
- Undertake measures to improve the aging equipment and facilities;
- Adopt immediate measures to put an end to repeated, preventable industrial accidents and explosions.

IndustriALL Global Union stands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metalworkers of KMWU in the struggle to improve vastly health and safety conditions at Posco Gwangyang Steelworks.

In solidarity,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Sanches'.

Valter Sanches, General Secretary

## < 별첨 자료 2.>

### [사고 이력]

#### 1. 하역기 작업 설명(동영상 참고)

<https://www.yna.co.kr/view/MYH20141201016900038>

#### 2. 원료부두 및 하역기 배치도



#### 3. 2020년 9월 22일 Unloader9호기 운전실과 선박(KIMOPOLIA호) 선체 일부의 충돌 사고 발생

-사고 경위 : 2020년 9월 22일 주간 근무 중 11시 40분경 #11번 선석 KIMOPOLIA호의 #8번 홀드와 #9번홀드 사이에 Unloader가 위치한 상태에서 전번 근무자와 교대를 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선박의 선수부터 1번 홀드 → 선미쪽으로 9번 홀드

한진감독(선박에서 작업지휘)이 6번 홀드로 이동하러하였으나 하역기의 위치를 8번 홀드였음에도 5번홀드로 착각한 운전자는 전진을 하지 않고 후진 주행을 하였습니다.

실제 8번과 9번 홀드에 사이에 있던 Unloader9호는 얼마 움직이지 않아 선박의 선실 일부와 Unloader9호의 운전실이 충돌하여 운전실 레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는 초심 인사위원회(2020.10.16.)에서 정직2개월, 재심 인사위원회(2020.11.02.)에서 정직1개월의 중징계 처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실수는 인정하나 신호수 배치 하에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기계적, 전기적으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에게 지우며 중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지방노동위-기각(징계유지), 중노위 재심 진행검토 중)

#### -사고의 위험성

하역기 1대당 1명의 신호수가 배치 되나 CSU 하역기 5대에만 신호수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무전기가 지급되고 나머지 8대의 하역기(GTSU)에는 무전기가 없어 오로지 수신호에만 의지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 하역기의 운전실이 지상으로부터 30m이상 높이에 위치해 있다보니 신호수의 수신호와 호각에만 의존 하다보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긴급한 상황에서 한진감독(무전기 지급)이 부재하거나 인지 못 할 경우 신호수는 위험을 알릴 방법은 수신호와 호각 뿐이라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한 상황이 발생함.

또한 충돌한 운전실과 선박의 9번 홀드가 가까이 작업을 하지만 실제 선박 선실과 하역기 운전실이 충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나 어떠한 안전 장치도 없음.

#### 4. 2021년 2월 1일 Unloader9호기와 CSU2호 충돌 사고 발생

-사고 경위 : 2021년 01월 01일 야간 23시 10분경 CSU2호기 운전자는 10번 선석에서 11번 선석으로 이동하라는 한진감독의 지시를 받고 이동하였고 23시 18분경 11번 선석의 한진감독이 급하게 장비를 세우라는 다급한 무전을 듣고 장비를 세웠으나 이미 CSU2호의 COUNTER WEIGHT와 Unloader9호의 HOPER FRAME부가 충돌함.





GTSU9호(Grab Type Ship Unloader)



CSU2호(Continuous Ship Unloader)

충돌 사진



-사고의 위험성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사고 이후 안전조치가 제대로만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하역기에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계적, 전기적으로 장비간 충돌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충돌방지센서가 고장났다고 보고를 하였음에도 정비가 되지 않은 채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주가 작업 현장 및 노동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다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안전거리센서를 수리하지 않고 가동하는 하역기는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반드시 장비의 안전거리센서를 수리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것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의무일 것입니다.

-충돌방지센서 관리자 정비 요청 및 보고사항

5. 2021년 2월 8일 롤러를 점검, 교체하던 (주)장원 작업자 중대재해발생

-사고 경위 : (주)포지트는 하역기 및 BELT CONVEYOR 운전 및 점검, (주)장원은 Belt conveyor의 ROLLER 점검 및 교체, 화일산기(주) BELT CONVEYOR 정비, 피시엠은 하역기 정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료부두 내에서도 여러 업체가 섞여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2021.2.8. 발생한 사고는 Unloader16호는 정상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주)장원 작업자는 지상 BELT CONVEYOR 점검을 하였고 협력사(포지트,장원)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노동부 및 경찰에서 현재 조사중인 사건입니다.

조사 중에 있어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메모

메모